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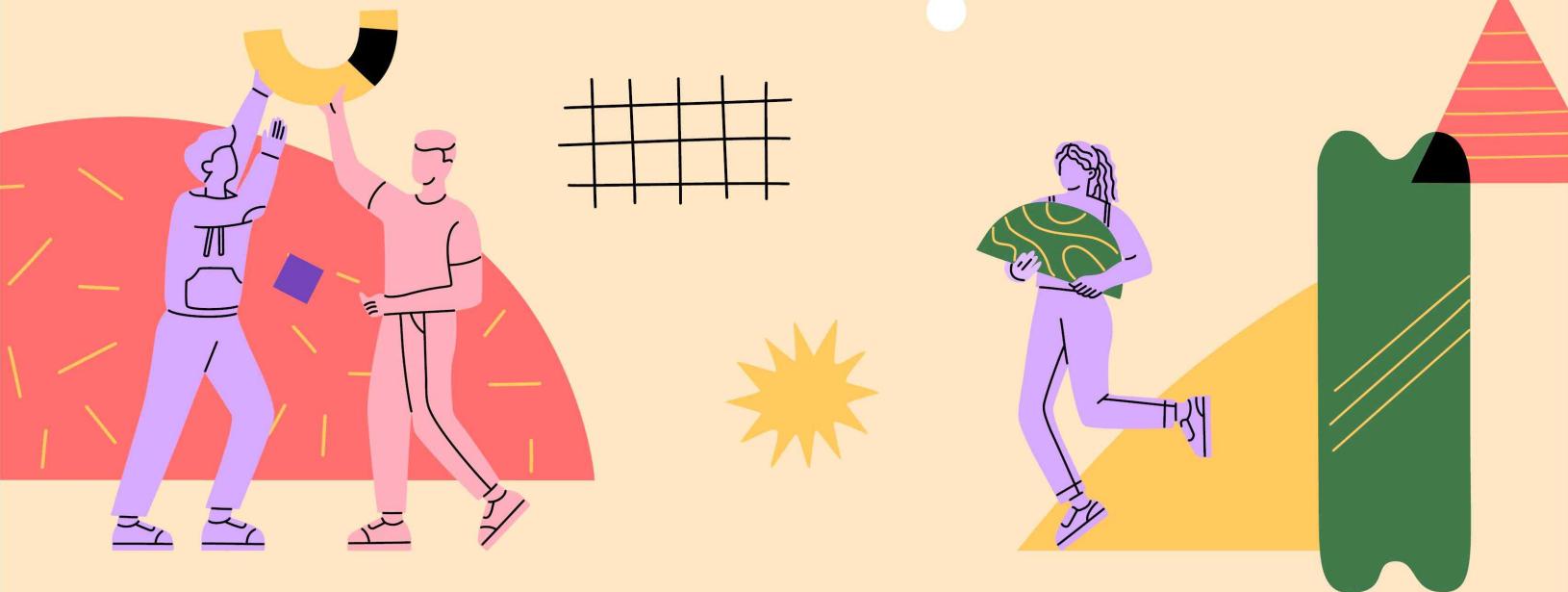
2023

행복한 학생을 위한
인천교육

교육 활동 보호

매뉴얼

Educational Activity Protection
Manual



CONTENTS



I. 교육활동 침해행위 / 5

II.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 수단 / 27



III. 교권보호위원회 / 33

IV.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방안 / 41

V. 교원치유지원센터(교원돌움터) 운영 / 79

부 록



1.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규 / 91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예시) / 121

3. 각종서식 / 125

4. 교육활동 침해 외 사안에 대한 대응 방안 / 168

교육활동 침해행위



2023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Educational Activity Protection Manual



I

교육활동 침해행위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¹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원지위법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규정함

»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원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教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1 교원지위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나. 교육활동을 침해행위의 주체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라고 규정함

①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중 ‘보호자 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보호자 등’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부모, 학생·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 동료 교원과 업무 분장으로 갈등이 있는데,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나요?

A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동료 갈등, 업무분장 갈등, 갑질 피해 등 고충이나 관리자의 복무관리 또는 행정사항에 대한 지시 등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객체

-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
-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교사, 기간제 교원

① 교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교원은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교사, 기간제 교원을 의미합니다. 학교 또는 유치원의 운영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는 행정직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교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교육활동 중인 교원

①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지위법이 적용되는 행위
②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권리 침해행위: 교원지위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이며, 이 경우 초·중등 교육법이 적용(학생 지도·징계)될 수 있음



I. 교육활동 침해행위

II.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시범적 구제 수단

III. 교권보호위원회

IV. 교육활동 침해 시안 단계별 대응 방안

V. 교원치유지원센터(교원돌봄센터) 운영

부록



- '교육활동 중'의 예시

- ①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 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 특별활동 · 재량활동 · 과외활동 · 수련활동 ·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 대회 등의 활동
- ② 학생의 등 · 하교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
- ③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④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 ⑤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 ⑥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 ⑦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중이나 입장 시 행하는 활동
- ⑧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출근 시간 전 또는 퇴근 시간 후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의 상황 · 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학생 교육에 관한 상담



참고 '교육활동'의 범위에 대하여

「교원지위법」에서 '교육활동'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교육활동'에 따르면,

- ①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 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 특별활동 · 재량활동 · 과외활동 · 수련활동 ·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② 등 · 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이 교육활동에 해당되며, 이밖에,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 · 하교 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채류시간, 학교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중이나 입장시 행하는 활동으로서, 위의 ①, ②와 관련된 활동도 교육 활동으로 인정함.

「학교안전법」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률로 학교 활동과 연관성이 있으면 보상, 보호한다고 법률의 범위를 상당히 넓힌 것임.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은 「학교안전법」에 따른 교육활동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음.



라.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 ①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②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 ③ 불법정보유통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 ④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 ①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②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 ③ 불법정보유통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 ④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①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②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③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④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⑤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²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❾ 교육활동 중인 강사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침해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교권 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❶ 현행 법령상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강사 등은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보호조치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학생 조치는 학교장 권한으로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教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가. 상해와 폭행

1) 상해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① 개념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간접적인 힘을 행사하여 다치게 하거나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함

②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손으로 교원의 뺨을 때려 고막이 찢어진 경우
- 책상 또는 의자를 밀쳐 교원에게 타박상이나 골절상을 입게 한 경우
- 교사에게 설사약을 몰래 먹여 배탈을 유발한 경우

ⓐ 상처가 아주 경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인 경우에도 상해에 해당되나요?

ⓐ 상처의 정도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인 경우는 비록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라 볼 수 없습니다.

2) 폭행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① 개념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함.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여 힘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며, 몸을 향해 물건을 던져 신체를 폭행하거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때리려고 거동하는 경우와 같이 간접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성립

②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원의 신체를 직접 때리거나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경우
-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경우
-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팔이나 다리를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경우
- 사람의 신체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경우



QA

① 교원에 대하여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나요?

② 1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고의로 한 행위여야 한다. 만약 교원에 대한 행위가 아니거나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라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아닙니다.

(가) 창밖에 쓰레기를 던졌는데, 우연히 그 창밖 근처에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맞은 경우
- 교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으므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아닙니다(이 경우 학교 안전사고로 다뤄 피해를 입은 교원을 보호). 이때 학생은 쓰레기를 창밖에 버린 행위 및 그로 인해 교원이 다친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서 학교장으로부터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선도(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활동 침해 행위는 아니므로 교원지위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는 아래 (나)의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나) 교원에 대한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 형사법상 고의로 취급하는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에게 범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그 발생 위험을 용인(容認)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화가 난 학생이 물건을 마구 발로 차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맞았는데, 학생의 행위 형태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이 물건을 차면 그물건이 날아가 교원이 물건에 맞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교원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로 취급됩니다.

나. 협박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형법 제2편 제30장(협박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1) 개념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해(해악)를 끼칠 것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함.
다만, 실제로 위협의 내용이 발생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함.
언어는 물론 행동(거동)을 통한 협박이 가능하며, 교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제3자에게 해악을 끼칠 것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원에게 집주소를 알고 있으니 퇴근길에 쫓아가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는 경우
- 교원의 가족 등 제3자를 해코지하겠다는 문자를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경우
- 교사의 지도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반항하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목을 겨누는 경우
- 학부모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교문 앞에서 자해하겠다고 소동을 피우는 경우

3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함(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①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 고소와 민원(진정)을 예고한 것이 협박이 될 수 있는가? 정당한 권리행사와 협박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A 아동학대 행위가 명백히 아닌데도 형사 고소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교원에게 공포심을 주는 것은 협박에 해당됩니다. 반면 교원의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형사 고소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원의 아동학대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학교나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한 수사기관, 관찰청의 수사·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이라도 교원에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벗어난 해악을 고지⁴ 한다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협박)사안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 명예훼손 및 모욕

1) 명예훼손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형법 제2편제33장(명예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① 개념

여러 사람 혹은 불특정 사람에게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내용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전파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말함. 명예를 손상 시킬 수 있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진실된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성립. 여러 사람이 아니라 단 1인에게만 유포한 경우에도, 1인을 통하여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음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생이 다른 학생·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특정 학생의 몸을 만졌다.”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
-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담임교사가 과거에 징계를 받았던 사실을 유포한 경우
-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불만을 품고 “A는 중학교 때 수학 성적이 전체에서 중간에도 못 미쳤었는데, 지금 우리 학교 수학 교사인 A의 매형이 시험 문제를 알려줘서 매번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 한 명에게 특정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얘기하였고, 위 사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한 증거가 있는 경우

4 외관상 권리행사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권리의 남용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 606 전원합의체 판결).



QA

① 학생이 자신과 친구 1명만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교사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허위 사실을 전송하여 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나요?

②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진실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1인에게만 말했다 하더라도, 그 1인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대판 2007 도8155 참조)

2) 모욕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형법 제2편제33장(명예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① 개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함.
언어를 통한 모욕은 물론, 행동(거동)을 통한 모욕도 가능. 심각한 정도의 모욕에 대하여 침해자를 형사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모욕죄는 친고죄⁵ 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의한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함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수업 중 학생이 교사에게 ‘○○놈’, ‘○○년’, ‘○랄한다, ○새끼’ 등 경멸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
- 교사의 외모나 신체적 특징을 비하하거나, 비하하는 별명을 만들어 부르고 다니는 경우
- 특정 교사에 대하여 ‘A선생은 명청하다. 함량 미달이다.’ 등의 비하 발언을 다수인이 있는 장소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경우⁶
-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경멸하는 표현이나 언행을 하는 경우

QA

- 5 피해자에 의한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친고죄’라고 칭한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고소한 경우라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 6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가 있다. (대판 2003도4934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한 경우 형법의 모욕죄 규정이 적용된다.

① 교사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A 전화 통화 중 욕설은 일대일 대화 중이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형법상 모욕죄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A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반면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의 적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불친절, 무례만으로는 모욕이라 할 수 없습니다.

③ 교원 앞에서 욕설을 한 후 학생이 “선생님한테 한 말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나서 한 혼잣말이에요”라고 한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요?

A “선생님한테 한 말 아니에요, 혼잣말이었어요.”는 교원 앞에서 욕을 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입니다. 그러나 혼잣말로 한 발언이라도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한다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모욕)가 됩니다. 형법상 모욕은 타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 함으로써 성립한다(‘○○놈’, ‘○○년’, ‘○랄한다’, ‘○새끼’ 등). 그러므로 교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하였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모욕)에 해당됩니다.

라. 손괴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형법 제2편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한 범죄 행위]

1) 개념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숨기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함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사의 지도에 반항하며 책상, 창문, TV 등 학교의 기물을 망가뜨리는 경우
- 교사의 출석부나 교무수첩의 일부나 전부를 찢어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 학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파일을 일부러 숨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④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린 경우도 손괴에 해당되나요?

Ⓐ 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학생이 자신의 재물을 망가뜨린 경우는 손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하교 후에 다시 학교로 돌아와 아무도 없는 학교에서 학교 유리창을 깨트리고 소화기를 분무하여 학교 복도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나요?

Ⓐ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도 없는 학교에서 학교 시설을 망가뜨린 행위는 손괴죄에는 해당하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는 볼 수 없습니다.

I. 교육활동 침해행위

II.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 수단

III. 교권보호위원회

IV. 교육활동 침해 사건 단계별 대응 방안

V. 교원치유지원센터(교원돌봄센터) 운영

부록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폭력 범죄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2호]

1) 개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함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폭행 또는 협박으로⁷ 교사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여(포옹이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강제추행)
-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학생이 수업 중 교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
- 학생이 교사의 사진에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만들어 다수 학생에게 배포한 경우 (음화제조·반포)
-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 사진, 내용 등을 교사의 휴대 전화로 전송한 행위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① 불법촬영에 가담하지 않고, 불법촬영물을 보거나 갖고만 있었던 학생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성폭력범죄)로 조치될 수 있나요?

A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⁸」 상 성폭력범죄 행위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와 그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나아가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시청하거나 이를 저장·소지하는 것 역시 위 법률상 성폭력범죄 행위입니다.(불법 촬영물임을 알지 못하고 우연히 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행위가 아님) 이와 같이 불법촬영물 촬영행위, 이를 유포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자의적으로 요청하여 보거나 소지·저장하는 행위까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행위가 되므로 모두 교육활동 침해행위 (성폭력범죄)로 다뤄집니다. 이 점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지도하여 학생 스스로가 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여 추행한 경우가 포함된다. 특히 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것도 포함된다. (대판 91도3182 참조, 대판 94도630 판결 참조)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3 음란하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나요?

③ 판례 등에 따르면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판 98도679 참조)

바. 불법정보 유통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70조, 제74조]

1) 개념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 등)을 통하여 ① 음란한 내용의 정보,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③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함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사를 비방하기 위하여 단체채팅방에 담임교사가 자녀를 아동학대 하는 장면이 학교 CCTV에 찍혔다는 허위의 사실을 전송한 경우
- 교사의 지도에 불만을 품어 교사를 비방하기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자녀의 담임교사가 금품을 요구하고 학생들을 차별한다는 허위 사실을 작성한 경우
-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메일을 통해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전화나 문자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경우



ⓐ 1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전파의 속도가 빠르고 확산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고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량 비교>

법률	죄명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허위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형 법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교사의 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로부터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문자를 1회 받은 경우, 위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나요?

A 2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불법정보 유통 행위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자 등을 ‘반복’ 하여 보내오는 경우⁹이기 때문에, 단 1회만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내용이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참고로, 관련 판례에서는 총 7개월 동안 약 3, 4개월 간격으로 2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는 ‘반복’하여 유통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는 않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대판 2008도4351 참조) 반면, 하루에 3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문자를 발송한 행위는 반복하여 발송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대구지법 2007노146 참조)



④ 3 평상시 교사의 교육활동 전반에 불만을 품었던 학부모가 인터넷 게시판에 담임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교사를 비하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자신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니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가요?

A 3 위와 같은 경우 작성된 글에 포함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작성된 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작성자의 작성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판 2005도5068 참조)

또한, 해당 글로 인하여 입게 되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와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의 크기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사실을 알려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이 큰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판단 없이 무조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3. 교육부장관 고시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가.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호,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 제2조제1호, 형법 제136조, 137조, 314조]

1) 개념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는 교원의 공무 행위, 업무 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공립 교원의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행위, 사립학교 교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함

- 공무집행방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국·공립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공무)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함.
그렇기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공무를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경우 성립.
- 업무방해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적극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속이는 것) 또는 위력(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힘)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함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와 담당 교원의 먹살을 잡고 뺨을 때려 수업을 방해한 경우
-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괴롭힌 학생을 혼내준다면,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가 관련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끊어하고 이를 만류하는 교사에게 말리면 ‘너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
- 학생의 수업 태도를 지도하자, 교사에게 반항을 하며 교사를 폭행하고 큰소리로 위협을 하여 수업이 진행 될 수 없도록 한 경우
- 교사에게 ‘결석 처리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계속 괴롭히겠다’라고 협박하여 정당한 출결 처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학부모 등이 자신의 배경이나 권세, 지위를 이용하여 교원을 협박하여 정당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보호자가 교사의 지도에 불만을 품고 A교사가 수업 중인 교실로 쳐들어와 “자격도 없이 줄타고 낙하산으로 들어온 너(교사)는 수업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허위 사실을 큰 소리로 말하며 교사를 밀친 경우



QA

① 수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이 의도적으로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한다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되나요?

A 1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2023.3.23. 시행)에서는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학생이 의도적으로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다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출근하여 수업을 준비 중이거나 수업이 끝난 후 교무실에서 근무 중인 교원을 찾아와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는가요?

A 2 형법 제136조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구분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업 중이 아니더라도 학교에 출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교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침해자가 교원이 직무 집행 중인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판 99도383 참조)

③ 학교폭력 사안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2~3시간가량 교무실에서 큰 소리로 교원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고, 다른 교직원들에게도 시비를 걸거나 담당 교원이 수업하고 있는 교실의 문을 두드리고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는가요?

A 3 학교로 찾아와 2~3시간 동안 큰 소리로 교원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써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판 2013도11050 참조)

나.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호,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 제2조제2호]

1) 개념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말과 행동인 성적 언동으로¹⁰ 인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유형에 의한 성희롱이 해당함. 또한, 교원의 신체에 접촉하는 유형은 물론 교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말이나 행동으로 교사에게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만드는 거동도 모두 포함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성별에 상관없이 동성(同性) 간에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신체적 유형: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동의 없이 몸을 주무르거나, 쓰다듬거나, 만지거나 밀착시키는 등의 신체 접촉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언어적 유형: 음란한 농담, 신체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유, 신체 접촉 강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경우

(교원에게 자기야, 누나/오빠 사귀자, 섹시한테, 넌 내꺼야, 애교로 나를 녹인다, (신체부위가) 커요/작아요, 만져주세요, 첫 경험 말해주세요 등의 말을 통하여 수치심을 주는 경우)

■ 시각적 유형: 시각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림이나 문자를 형상화하거나 보이는 경우

(교원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하여 칠판, 책, 벽, 책상 등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쓰기, 음란한 사진을 교사가 보도록 교탁 위나 교사의 동선에 떨어뜨려 놓는 행위, 교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들여다보는 행위)

10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이며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볼 때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판 2007두22498 참조)



QA

② 교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성폭력범죄 행위(「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요?

A 2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에 의하면,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할 수 없고, 동일교 재학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이어야 전학 또는 퇴학 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원에 대한 ‘폭행(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성폭력범죄 행위’는 첫 번째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성폭력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교원에 대한 성희롱 사안이 해당 침해 학생에 의한 최초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면, 위 교육부 고시에 따라 전·퇴학 조치가 제한될 것입니다.

① 피해교원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바로 성희롱에 해당되는지요?

A 1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해서 바로 성희롱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원에 대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¹¹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라 교권보호 위원회에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② 불쾌한 성적 언동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A 2 불쾌한 성적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사안이 중한 경우 즉시 사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동료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성적 언동이 강제추행의 정도로 심각한 신체 접촉이나 성범죄에 해당될 정도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안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 침해자의 행동과 자신의 반응 및 기분을 육하원칙을 갖추어 메모 또는 기록을 확보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② 3 피해자가 침해자에게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하여야만 성희롱이 성립 되는지요?

❸ 아닙니다.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직접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전화, 메일, 문자메시지 등 의 수단을 이용하거나 주변인들을 통해 거부의사를 전달하거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언행이나 주변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성희롱은 성립됩니다.



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호,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 제2조제3호]

1) 개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서, 형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부당한 간섭을 반복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유형들이 이에 해당함. 다만, 침해행위의 성립 조건이 '반복적'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 1회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최소 2~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이 반복되는 경우에 해당. 또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교육 당사자가 정당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내거나 제안하는 것의 범위를 넘어서 부당한 간섭에 해당되는 경우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보호자가 교사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수시로 특별한 용무나 사유 없이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사의 업무나 수업에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교사의 수업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생활지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 자녀의 개인적인 이유로 학교 교육과정에 반복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 학생이 교원의 수업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정도의 수업 방해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 특정 과목 교사에게 수업 시간에 해당 수업 내용을 시키지 말고 자습 시간을 주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와 같이 교원의 교육과정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
- 시험 평가에 관하여 교사에게 시험 범위를 줄여라, 시험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 쉽게 내라는 등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 학생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기재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 등 생활기록부 기록에 관한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거나, 학부모의 검토를 받고 기록하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는 경우

① 1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 의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A 1 학생, 학부모 등의 교육 주체에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교원과의 자유로운 의사 소통이 중요하지만, 정당한 범위를 넘어 부당한 간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간섭이나 요구가 2회 이상 반복된다면 이런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리고 학생에게는 훈육이나 훈계 등에 의한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된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을 선도하거나 학부 모와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부당한 간섭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일어난 경우 육하원칙을 중심으로 사안에 대한 기록을 해 두어 정확히 횟수를 특정하여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② 2 학부모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표현을 하여 이로 인해 교원이 심리적으로 위축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요?

A 2 학부모(보호자)는 교육의 한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교육기본법 제13조 제2항에도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학부모의 이의 제기 및 의견 제시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조건 교육활동 침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에게 모욕적인 행동이나 폭력적인 행동 등 별도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다면 이는 정당한 교육활동 참여를 초과한 부분으로 별건으로 해결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원을 위한 치유 및 지원 프로그램이 시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호,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 제2조제4호]

1) 개념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가 2021. 10. 1.자로 개정되면서 새롭게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임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부모가 집에서 원격수업 중인 자녀의 수업 장면을 촬영하여 단톡방에 배포
- 학생이 수업 중인 교원의 얼굴을 촬영 후 합성하여 희화화한 후 다른 학생들과 돌려봄



QA

①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음성을 교원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A 정상적인 교육활동 상황에서 교원의 음성을 교원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교원의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¹²이고, 교원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한 간섭으로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새롭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되었으므로 교원의 수업 중 음성을 녹음하여 무단 배포할 경우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마.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호,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 제2조제5호]

1) 개념

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여지가 있는 사안의 내용이 「교원지위법」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도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될 수 있음



참고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教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은 「교원지위법」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독립적으로 규정된 다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준하는 사안에만 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엄격히 판단하여 학교장의 재량권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현장에서 학교장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특별히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수업 방해 행위와 무고 행위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자 함

12 음성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헌법 제10조 제1문).

① 수업 방해 행위 또는 교원의 지도,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가요?

A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확대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2023.3.23.) 되었고 고시안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수업방해 행위가 의도적이고 이에 대하여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 한다면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다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② 교원에 대한 무고나 허위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인가요?

A 교원에 대한 무고나 허위 민원은 「교원지위법」 상 독립된 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교원에 대한 정당한 형사 고소나 민원 제기와 구별되어야 하므로 먼저 고소, 민원 내용의 허위성이 밝혀져야 합니다.¹³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교권을 존중하지 않거나 교원의 전문적 지위·신분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고, 독립적으로 규정된 다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로 인정된다면,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로서 다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13 학교나 교권보호위원회가 무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한 수사기관, 관찰청의 수사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3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 수단



Educational Activity Protection Manual

II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 수단



1. 형사소송(형사 고소 및 고발)

-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법 등 각종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이를 고소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침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이 모욕죄 등 친고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고소권자인 피해자 본인이 고소하여야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함¹⁴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유효함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
- 고소(고발) 시 유의사항
 - 고소장(고발장)을 작성하여 검찰청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처벌 의사를 밝혀야 함.
 - 침해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목격자 진술서, 녹취 등의 기록을 확보해 두어 증거로 활용할 때 구제 확률이 높아짐
 - 고소(고발)를 한 이후라도 친고죄(예: 모욕죄)의 경우 침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 등의 사정으로 고소를 취하할 수 있음. 다만 고소를 취소한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고소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함.
- 사례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로 찾아와 수업 중인 교사를 교장실로 불러 무릎을 끊어 끓게 한 후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목격한 학교장, 교감, 동료교사의 사실 확인서를 확보한 후 피해 교사가 학부모를 모욕죄로 고소하여, 침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고소를 취하하였다.

14 이는 고소할 권한이 있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의 특성 때문이다.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권자 이외의 사람이 고발할 수 있으나,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2. 민사소송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교원이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발생시킨 상대방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음
- 청구 시 유의 사항
 - 소장(침해자(피고)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 되어야 함)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
 - 반드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침해지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여야 함
 - 불법행위와 교원에게 발생한 피해가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해야 구제 확률이 높아짐
- 사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교시 수업 시간에 심하게 떠들자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사가 학생에게 교무실로 잠시 내려가 있으라고 지도하자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을 하며 의자로 교사의 왼쪽 어깨 부분을 내리쳐 교사의 왼쪽 어깨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에 교사가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를 배상받았다.



3. 학교장 통고제15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 등 각종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소년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행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도 해당함. 이런 경우 학교장 통고제도를 활용하여 교권을 회복하고 해당 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절충적인 방법으로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학생에게 소년법상의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할 수 있음



참고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 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활용 방법

- 학교장이 관할 법원에 학생과 보호자의 성명, 주거,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의 내용을 서면 (통고서)으로 제출¹⁵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구술로도 가능함
- 원칙적으로는 학생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임

■ 장점

- 소년보호 처분을 받는 경우라도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학생의 장래에 전과로 인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15 세부적인 절차에 관한 안내는 각 지역 가정법원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음. 법원행정처(2018) “소년 통고 실무(개정판)” 참조

16 통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으로 우편 발송하면 되며, 통고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 메뉴에서 ‘통고’로 검색하여 내려 받기 할 수 있다.



■ 특징

- 학생의 비행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교육, 치료 및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함
- 학생이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아 신속한 문제해결을 통해 비행 초기에 선도 효과를 높일 수 있음

참고 통고 후 사건 처리 절차 ¹⁷	
수리 여부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고받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때 보호사건으로 수리 (소년법 제11조 제2항)
과학적 방법에 의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 수리 후, 소년에 대한 자료 수집·분석 등을 위하여 조사관조사, 전문가 진단, 상담조사, 결정전조사를 하거나, 비행의 죄질이 중한 경우 소년분류 심사원 임시위탁을 할 수 있다. 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상담조사기간과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기간은 학교 출석일수로 인정된다.
상담, 교육 등 처분 전 사전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기에 앞서, 소년과 보호자로 하여금 심리상담, 화해권고, 가족 캠프, 처분전교육, 청소년 참여법정 등 절차를 미리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심리 개시 여부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나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심리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심리개시결정: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리불개시결정: 송치서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리불개시결정을 할 수 있고,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할 때에도 소년을 훈계할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보살피고 교육하도록 이야기할 수 있다.
심리기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년부 판사가 심리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소년과 보호자를 소환하고 보조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알림 보호자는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심리는 소년의 인격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보호처분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처분 결정: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 송치: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형사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 소년보호처분결정: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호부터 10호 까지의 보호처분 중 선택하거나 몇 가지 보호처분을 끓어서 결정할 수도 있다.
보호처분 이후의 조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처분을 한 이후에도 법원은 소년이 보호처분 내용을 잘 이행하는지 여부, 다른 비행에 노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소년법 제37조 제1항 단서)

17 법원행정처(2018) “소년 통고 실무(개정판)” 17쪽부터 24쪽 까지를 요약한 내용임.

2023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교권보호 위원회



Educational Activity Protection Manual

III

교권보호위원회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가. 기능 및 역할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음(「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항)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해당 학교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사전에 학교별 교육활동 침해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사전에 마련한 침해 기준을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안내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피해 교원 보호조치 등의 판단 자료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학교에서 발생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나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분석하고, 해당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나. 구성

위원 정수	위원장	위원의 자격 등	임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장 중 선출	①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②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④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⑥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에 있는 사람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년 (1회 연임 가능)
위원 해촉			임기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 간사: 위원회의 회의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음.
통상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담당자가 수행하게 됨.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예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인원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교원 수 (2분의 1 초과 금지)	2명 이하	3명 이하	3명 이하	4명 이하	4명 이하	5명 이하
개의 정족수 (3분의 2 이상 출석)	4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6명 이상	6명 이상	7명 이상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임명)시 위촉(임명) 동의서 작성 및 위촉장 수여 【서식 18, 19】

① 1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학교장이 위원이 될 수 있는가요?

■ 학교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권자인 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권자인 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 운영

● 회의 소집 및 정족수

회의 소집 사유	정족수
①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개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②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③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받은 경우, 학교 규칙으로 정한 기한 내에 신속하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표준안에서는 21일 이내 소집 권장)

● 제척 등의 사유

제척	기피	회피
⑦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당사자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	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해당 사건 회피 의무 ⑤ 위원에게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해당 사건 회피 가능
⑮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척 등 사유가 있는 위원은 개의 정족수에 포함하나,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기피 신청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과반수로 결정함

● 기피신청 운영 예시

심의위원회 개의 도중 기피신청을 받는 경우	① 신고인이 입장하여 착석 후, 위원장이 기피신청 의사 여부를 질문 ⑤ 신고인이 기피신청 의사를 밝히고 신청서 작성 후 잠시 퇴장 ⑥ 위원회가 기피신청 내용에 대한 과반수 의결(수용, 불수용) ④ 신고인 재입장 후 위원회 의결 결과 안내 ⑨ 회의 속개
심의위원회 개의 전 기피 신청을 받는 경우	⑦ 회의 시작 전 신고인이 대기실에서 기피신청서 작성 ⑤ 위원회는 기피신청 내용에 대한 과반수 의결(수용, 불수용) ⑥ 회의 진행 중 신고인 입장 시, 기피에 대한 위원회 의결 결과 안내 ⑨ 회의 속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신고인, 피신고인 모두 같은 순서로 운영 가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상황에 따라 기피신청 운영 방법을 선택하여 운영 가능



① 관련 학생이나 교사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나요?

A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를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변호사 신분증(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또는 지방변호사회 발급) 및 위임장(경유증표 부착 또는 첨부해야 함)을 제출받아 변호사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② 제척, 기피, 회피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정족수에 산입 되나요?

A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르면, 제척, 기피, 회피된 위원은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척, 기피, 회피된 위원은 위원회 개최를 위한 의사 정족수에는 산입되나, 안건 심사 결정을 위한 의결 정족수에는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09-0129, 2009.5.29. 참조)



2. 인천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가. 기능 및 구성

1) 기능 [교원지위법 제19조제1항]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성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2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1. 해당 시·도 의회 의원

2. 해당 시·도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시·도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

8.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위원의 제척 등 사유와 해촉 사유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동일



나. 운영(인천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인천광역시교육훈령 제156호, 2020.3.2.]

1) 회의 소집 및 의결

■ 회의 소집 사유

- ①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 ②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③ 그 밖에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 분쟁의 재조정

■ 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이 불성립되었을 때 피해 교원이 심의를 원하지 않고, 양 당사자 모두 다시 한번 분쟁 조정을 원하는 경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시안 발생 시 양 당사자가 모두 분쟁 조정을 원하는 경우

■ 분쟁 조정 시 유의 사항

- 분쟁 조정 신청서 제출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 조정을 거친 경우에 그 분쟁 조정 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교교권 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해당 시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분쟁 조정 개시 거부·중지 사유

-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 조정을 거부한 경우
-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분쟁 조정 연기 신청

▶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분쟁 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기 신청을 받은 경우 분쟁 조정 기일을 다시 정함

– 분쟁 조정의 결과 처리: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

2023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 방안



Educational Activity Protection Manual

IV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방안



1.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

▣ 교원지위법

제16조의3(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가. 필요성

-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학생, 교사 모두 회복하기 힘든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어,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교육이 중요함
-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선제적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함
-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갑질 등과의 경계 불명확성으로 인한 학교의 혼란을 방지함

나. 세부사항

- 대상: 교직원, 학생, 보호자
- 시기: 연 1회 이상
- 방법
 - 교직원: 직장 내 연수, 원격 연수를 활용하여 실시
 - 학생: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
 - 보호자: 학교교육과정설명회,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 SNS 등을 활용하여 실시
- 내용
 - 교직원
 - 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②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 ③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 ④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생

- 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②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 및 사례
- ③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 ④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보호자

- 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②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 및 사례
- ③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 ④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 ⑤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림

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활동

- 학생, 교직원, 학부모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학교규칙 마련
-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학교의 대응 지침 마련
-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적 분리 조치 및 상담 등 특별프로그램 진행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대상·내용·횟수는?

- A** 「교원지위법」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각 대상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명시되어 있음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사안처리 5단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단계별 대응요령〉





가.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 단계

1) 업무담당자(교장, 교감, 업무담당 교원 등) 대응요령

- 미리 업무담당교원 지정
- 인지 즉시 개입
- 교육현장 안정화
 - 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분리
 - : 관련자를 교무실·상담실 등으로 이동
 - 목격 학생 진정시키기
- 보호자에게 연락
 - 사안 발생 안내 및 면담 일정 협의
- 범죄행위의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가능
- 언론 등 대응 창구 단일화

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에 긴급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A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는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과 같은 법률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긴급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필요한 경우 피해교원에 대한 특별휴가나 배치전환 등의 다른 방법으로 관련 학생과 접촉을 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피해교원 대응요령

- 가해행위 중단 요청
- 동료교사 등 주변에 도움 요청 또는 현장에서 벗어나기
- 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신고

나.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보고 단계

1) 업무담당자(학교장) 대응요령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인지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교원지위법」 제15조)
-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

- 특별휴가, 조퇴, 병가 허가
- 응급처치, 병원후송, 심리상담 지원 등
- 심리상담, 법률상담, 공무상요양 신청 안내 등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학교장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즉시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학교에서 사전에 수립한 교육활동 침해 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보고서나 진단서 등 증빙서류는 추후에 구비할 수 있습니다.

② 학교장의 판단으로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특별휴가를 승인하였는데 이후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이미 사용한 특별휴가의 복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와 같은 경우 이미 사용한 특별휴가를 병가나 연가로 정정하면 됩니다. (연가나 병가로 사용했을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판단한 경우 특별휴가로 정정하면 됩니다.)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에 피해교원에게 심리상담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나요?

A 피해교원에 대한 신속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 전이라도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교원에게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④ 피해교원이 특별휴가 5일을 사용했습니다. 요양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특별휴가 5일을 사용하고도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공무상병가를 추가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상 병가 기간이 6일 이내인 경우 학교장이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피해교원 대응요령

- 특별휴가[「교원지위법」 제14조의3,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조퇴, 병가 신청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특별휴가)

①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이용 방법: 학교교권보호책임관 상담 이후 신청 가능(교육활동 침해 처리(접수)대장에 상담 내용 기록)



- 주의 사항: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 기준 결재한 특별 휴가를 취소하고 사유에 맞게(예: 연가 또는 병가 등) 해당 기간 복무 처리를 정정
- 부상 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요청
 - 공무상 병가제도
 - 근거: <2023 교원인사 실무도우미> 병가
 - 180일 이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 후 승인 결정에 따름
 - 6일 이내: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가 가능

ⓐ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의 특별휴가 허가 기준 및 사용 범위는?

- A** 학생 및 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사실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경우 또는 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명백하여 피해 교원의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 학교장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에 따라 신속한 피해 교원 보호조치 및 교원 회복 지원을 위해 사안 발생 시 5일의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이라면, '교육 활동 침해행위처리(접수) 대장'이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3)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안발생보고

- 유·초·중: 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와 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로 동시 공문 보고
- 고·특수·기타학교: 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로 공문 보고

※ 중대사안의 경우, 교원돌움터 담당장학사와 즉시 유선 연락, 이후 24시간 이내에 사안 보고(공문) (서식3-2)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인한 사망사고 및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인한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행위
4. 그밖에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교육감이 침해 행위가 중대하여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다. 사안 조사 단계

1) 업무담당자(교장, 교감, 업무담당 교원 등) 대응요령

- 피해교원 면담
 - 피해교원 상태 확인
 - 사안처리절차 안내
 - 피해교원 의사 확인
 - : 관련자에 대한 조치 여부 및 정도, 필요한 보호조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 분쟁조정 신청 여부 등
 - 사안발생경위 확인
 - : 사건 발생 일시, 장소, 전후 사정, 동기, 피해정도 등
 - 문답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등 작성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면담
 - 관련자 상태 확인, 사안 처리 절차 안내
 - 피해교원과의 관계회복·분쟁조정 의사 확인
 - 사안 발생 경위 확인
- 그 밖의 사안 조사
 - 목격자 진술, 현장사진 등 관련 증거 수집
 - 기타 조치 적용에 필요한 사항 조사
 - : 관련 학생의 평소 품행,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 교우관계, 피해교원의 피해 정도, 관련 학생과 피해 교원 간 사과나 합의 여부, 피해교원의 임신 및 장애 여부, 관련 학생의 장애 여부 등
-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

2) 피해교원 대응요령

-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 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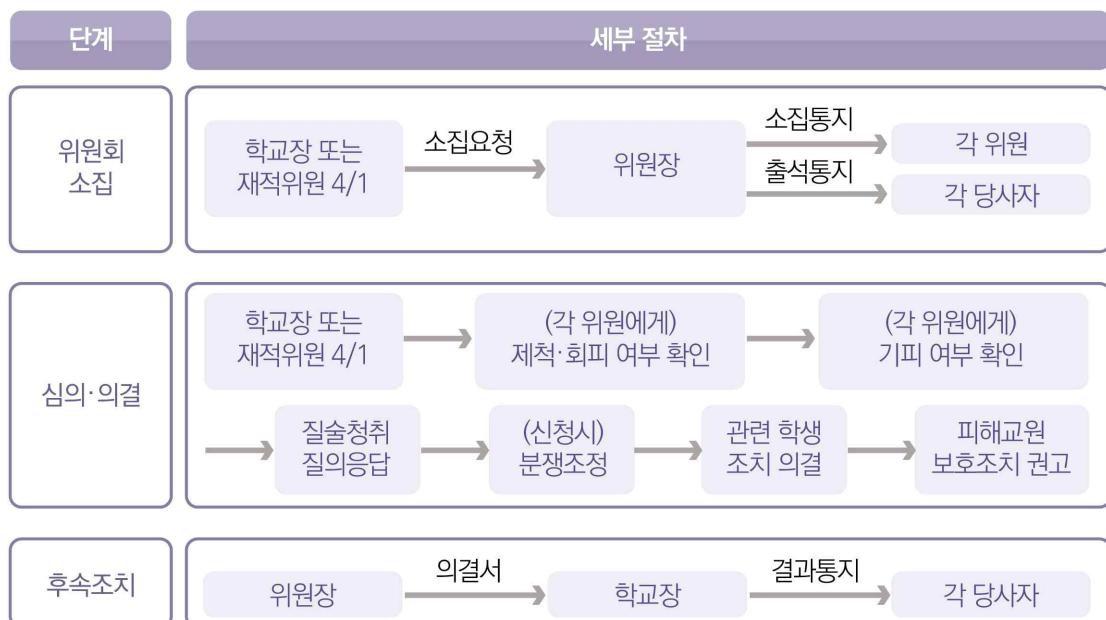


<사안 조사 단계에서 주의사항>

- 업무담당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 유지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 일방적인 관용이나 이해를 구하는 발언, 일방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발언, 징계를 운운하는 발언 등 하지 않도록 주의
- 관련 학생 면담 시 사전에 보호자와 협의 후 학습권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실시
- 문답 시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진술 유도
- 진술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주의하고 가능한 의문사항이 없도록 충실히 조사

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단계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단계별 운영 개요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단계

- 학교장 또는 재직위원 4분의 1 이상 요청 시 위원장이 회의 소집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신속하게 위원회 소집(21일 이내 소집 권장)
- 회의개최 3~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출석통지
- 회의는 재직위원 2/3 이상(과반수가 아님에 주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단계에서 주의사항>

- 학교장은 신고받은 사안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성립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심의를 위해 사전에 수립된 학교 내 교육활동 침해 행위 기준을 제공하여야 함
- 사건·관련 학생별로 안건을 세분화하여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 출석통지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전화·문자 등을 병행하여 가급적 출석을 유도함
- 출석통지서에는 어떤 사유로 회의가 개최되는지 알 수 있도록 사안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함
- 당사자가 출석 거부 시 서면진술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서면진술도 거부 시 진술포기서를 받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음을 기록으로 남김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단계

가) 심의운영의 원칙

(1) 개별심의의 원칙

- 원칙적으로 여러 학생에 대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의해서는 안 됨
- 한 학생이 다수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경우 병합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의
- 학생별로 사건을 나눠서 심의함

- A학생이 甲교사와 乙교사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경우 A학생의 '甲교사에 대한 행위'와 '乙교사에 대한 행위'는 병합하여 하나의 조치 결정
- B학생과 C학생이 동시에 丙교사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경우 'B학생의 丙교사에 대한 행위'와 'C학생의 丙교사에 대한 행위'는 구분하여 각 학생에 대해 별개의 조치 결정

(2) 학생의 인격 존중과 교육적 배려

- 학생에게 조치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증에 따라 조치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함
- 학생에 대한 조치는 단순히 잘못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학생의 개선과 교육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함을 유념해야 함
- 절차의 전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교육적 목적에 부합해야 함



나) 심의의 진행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의사항>

- 각 당사자 입장 시 기피신청 여부 확인
- 각 당사자의 자유로운 진술 기회 보장
- 답변을 강요하는 행위, 일방적으로 관용과 이해를 구하는 발언, 일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발언 등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
- 관련자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문제점을 인식시켜 책임의 자각과 반성을 촉구하고 피해교원과 관계를 회복 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유도하되, 일방적으로 나무라는 발언, 인신공격성 발언, 심의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학생의 ‘보호자’란 누구인가요?

A 여기서 ‘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예를 들어 학생과 동거하는 조부모)을 말합니다.

②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가 아닌 지인이나 친인척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가 아닌 지인이나 친인척 등은 행정절차에서 학생의 대리인으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회의에 참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의에 필요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1)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실의 심의

- 각 당사자의 진술, 문답서 및 진술서, 목격자 진술 또는 진술서, 조사보고서 등 증거에 의하여 가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
- 각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적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위원회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당사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함
-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을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않을 경우 조치없음으로 종결 가능

(2) 조치의 결정

(가) 조치결정의 기준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의 기준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름[별표참고]

- ①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②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 ③ 학생과 피해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 ④ 피해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 ⑤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별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심의 기준

① 기본 판단 요소

구분	침해 행위 심각성	침해 행위 지속성	침해 행위 고의성	구분	침해학생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 관계회복정도
매우높음	5	5	5	높음	0	0
높음	4	4	4	보통	1	1
보통	3	3	3	낮음	2	2
낮음	2	2	2	없음	3	3
매우낮음	1	1	1			
없음	0	0	0			

② 추가 판단 요소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용 여부 의결

구분	추가 판단 기준	조치 내용
감경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
가중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호 단독조치 또는 1호·2호·4호·5호·6호와 부가 조치 가능

*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 7호 ⇌ 6호 ⇌ 5호 ⇌ 4호 ⇌ 2호 ⇌ 1호

* 교내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 결정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구분	점수	조치 내용
조치없음	0~4	-
교내선도	1호	5~7
	2호	8~10
외부기관 연계선도	3호	-
	4호	11~13
교육 환경 변화	5호	14~16
교내	6호	17~21
교외	7호	전학 퇴학

* 3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점수에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단독조치를 내릴 수 있음

【 전학·퇴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위의 1,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최초 발생한 사건에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나) 조치결정의 방법

- 기본 판단 요소 중 침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0~5점 척도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학생과 교원의 관계회복 정도는 0~3점 척도로 평가
- 각 항목별 총점에 해당하는 조치 선택
- 추가 판단 요소로 가중·감경사유가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가중·감경 여부 결정 후 최종 조치 선택
- 학교에서의 봉사 또는 사회봉사로 의결하는 경우 총 시간을 함께 결정
- 출석정지로 의결하는 경우 총 일수를 함께 결정
-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부가 여부 결정
- 전학으로 의결할 경우 반드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부가 여부 결정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3호)로 의결하거나 부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참여, 특별교육을 부가할 경우에는 총 시간을 함께 결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기본 판단 요소 중 각 항목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성에서 3점, 지속성에서 3점, 고의성에서 4점, 반성의 정도에서 2점, 관계회복정도에서 1점으로 평가된 경우 총점 13점으로 출석정지에 해당하고, 여기에 더해 학생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하여 최종적으로 사회봉사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결정과정에서 각 항목별 점수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A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결정과정에서 각 항목별 점수는 각 항목별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하고, 평균을 내는 방법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숙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있나요?

A 기본 판단 요소의 총점이 4점 이하이거나 기본 판단 요소 총점상 학교에서의 봉사(5~7점)에 해당하거나 학생에게 장애가 있어 감경사유가 있는 등 사안이 경미하고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목적상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조치없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감경사유인 “장애”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학생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 반드시 감경을 하여야 하나요?

A 여기서 “장애”란 “신체적 기능의 결함이나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 등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이라는 뜻에서 넓은 의미의 장애를 의미하며, 반드시 장애인으로 등록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장애가 있는 등 가중·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가중·감경할지 여부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즉 가중·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가중·감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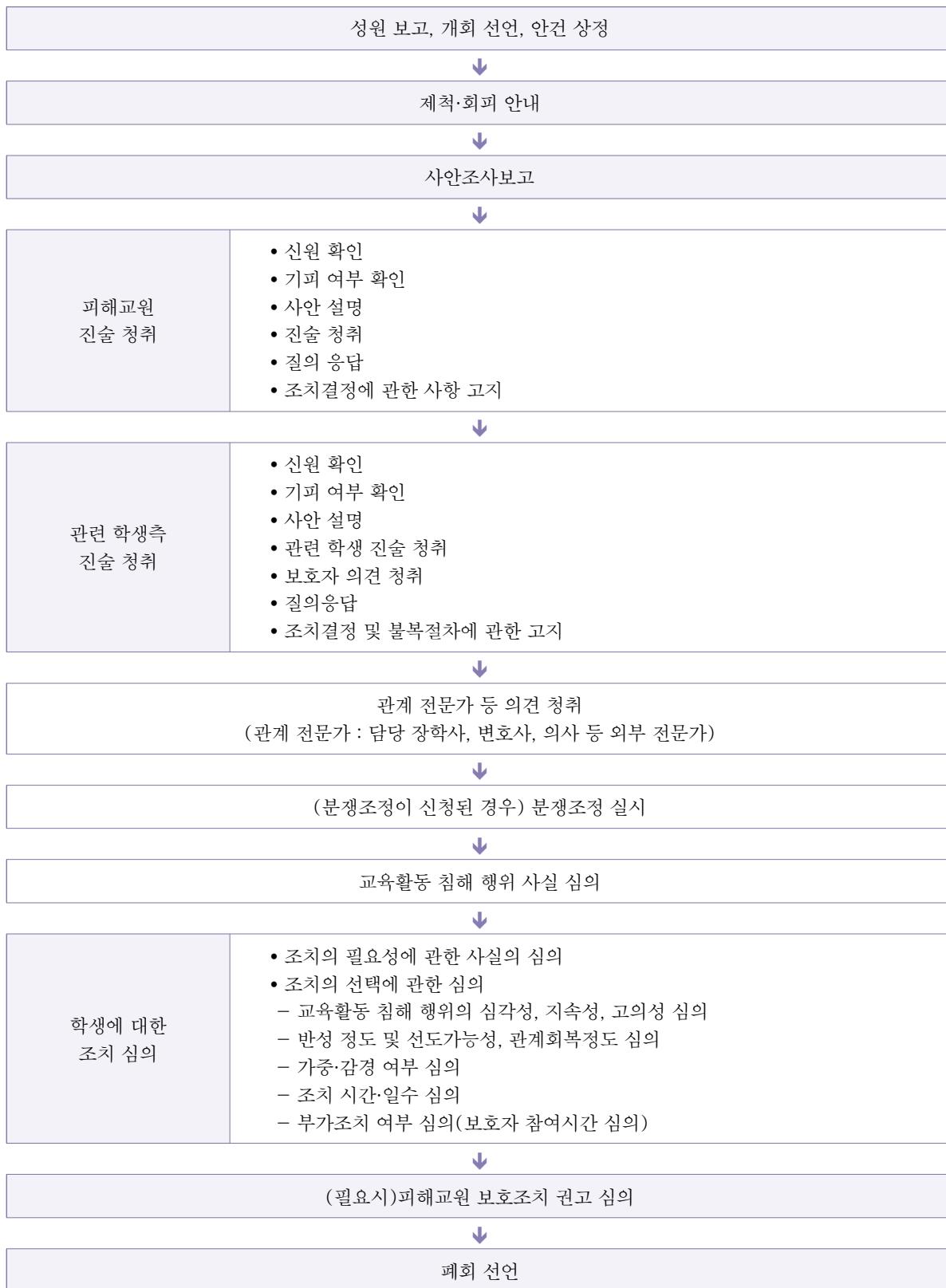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권고전학” 등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이므로 임의로 여기서 규정한 것 외에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마) 회의록 작성

- 회의록에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 포함
- 각 위원들의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진행 개요〉 (예시)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진행 시나리오<침해관련자가 학생인 경우 예시>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시작전	회의 자료 준비 및 출석위원 확인
개회 선언	<p>(간 사) 안녕하세요. ○○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간사 ○○○○입니다. 지금부터 ○○○○학년도 ○○학교 제○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p> <p>(위원장) 간사께서는 성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p> <p>(간 사) 재적위원 ○명 중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p> <p>(위원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재적위원 ○명 중 3분의 2 이상인 ○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학교 제○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회를 선언 합니다.</p>
위원장 인사말	<p>(위원장) 비쁘신 일정 중에도 ○○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교원의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목적과 규정에 따라 올바른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p>
안건 상정	<p>(위원장) 오늘 심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번호 2000-OO, A교사와 B학생이 관련된 사안입니다.</p>
제척 · 회피 안내	<p>(위원장) 위원의 제척·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라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또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피하실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p> <p>(위원들) 없습니다.</p>
주의 사항 안내	<p>(위원장)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중 욕설, 폭언, 폭행 등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회의 진행과정은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녹취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사안 조사 보고	<p>(위원장) 이번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p> <p>(간 사) 사안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월 ○일 ○○에서 발생하였습니다. B학생이 수업 중이던 A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이라고 욕설을 하고 팔을 휘둘러 A교사의 허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습니다. ○월 ○일 해당 교원 및 목격자인 C학생의 진술이 이루어졌고, ○월 ○일 B학생의 진술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증거로 A교사에 대한 진단서가 제출되었습니다. (※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가 있는 경우 요약 보고)</p> <p>※ 당사자 사이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간 사) A교사와 B학생은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한 점에서 주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A교사는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B학생은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관련 증거로 ~이 제출되었습니다.</p> <p>(간 사) 양측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의 의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p>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생점 사항 확인	(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원치 않으므로 이번 회의의 주요 생점 사안은 당사자의 주장 중 상반된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피해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에 대한 파악으로 요약됩니다.
질의 응답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나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간사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교원 진술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위원 동의) 다음으로 피해교원의 진술을 듣고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해당 교원을 입장시켜 주십시오. <대기 장소에 있던 피해교원 입장> (위원장)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해교원) 저는 ○○○입니다. (위원장) 먼저, 기피신청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와 관련해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기피신청할 위원이 있습니까? (※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 (위원장) 다음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관련 내용을 잘 듣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사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생님께서는 간사가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사안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질문 또는 필요한 발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
	<p>※ 주요 질의 및 확인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해행위 사실 확인(특히, 학생 및 보호자의 주장과 다른 경우) - 기본 판단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관계회복 정도) - 부가적 판단요소(임신, 장애 여부) - 그 밖에 선도·교육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위원 동의) 선생님께서는 이 사안과 관련한 요구 사항 등을 포함하여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학생에 대한 의견 및 보호조치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진술) (피해교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일주일 내에 서면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퇴장 (위원장) 하셔도 좋습니다.
	<피해교원 퇴장>



절차	세부 진행 발언
관련자 진술	<p>(위원장) 다음으로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측의 진술을 듣고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관련 학생과 보호자를 입장시켜 주십시오.</p> <p><대기 장소에 있는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입장></p> <p>(위원장)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p> <p>(학생) 저는 ○○○입니다.</p> <p>(보호자) 저는 ○○○ 학생의 아버지/어머니 ○○○입니다.</p> <p>(위원장) (기피신청 안내, 주의사항 안내)</p> <p>(위원장) 다음은 시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학생 및 보호자께서도 관련 내용을 잘 듣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간사는 사안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p> <p>(간사) (사안설명) 이상입니다.</p> <p>○○○ 학생과 보호자는 간사가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십시오.</p> <p style="text-align: center;"><관련 학생 및 보호자 진술></p> <p>(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답변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주요 질의 및 확인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해행위 사실 확인(특히, 피해교원과 주장이 다른 경우) - 기본 판단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관계회복 정도) - 부가적 판단요소(장애 여부) - 그 밖에 선도·교육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div> <p>(위원장)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p> <p>(학생/보호자) (마지막 진술)</p> <p>(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조치결정은 일주일 안에 학생의 주소지로 서면통지될 것입니다. 퇴학(고등학교만 해당) 또는 전학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학교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생 및 보호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관련 학생 및 보호자 퇴장></p> <p>(위원장) 지금까지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필요시 간사는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대한 자료 제공,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 및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중 교육활동 침해유형 참고)</p> <p>(※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관련 사실 인정 및 해당 사실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의)</p> <p><위원 상호 의견 개진></p> <p>(위원장) 지금까지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p> <p><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p> <p>(위원장) 해당 시안은 출석위원 ○명 중 ○명의 찬성으로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p>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사실 심의	

절차	세부 진행 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판단 요소 심의 <p>(위원장) 다음으로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간사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자료 제공)</p> <p>(위원장) 먼저 기본 판단요소 중 '침해행위 심각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각성' 정도에 대한 점수와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심각성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점수 의결></p> <p>(위원장) 침해행위 심각성은 출석위원 ○명 중 ○명의 찬성으로 ○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p>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동일한 방법으로 기본 판단 요소 심의></p> <p>(위원장) 다음으로 '침해행위 지속성'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침해행위 고의성'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침해 학생 반성 정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계회복 정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p> <p>(위원장) 그럼 기본 판단요소에 대한 심의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따라 심각성 3점, 지속성 3점, 고의성 3점, 침해 학생 반성 정도 1점, 학생과 교원의 관계 회복 정도 1점, 총 11점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에 따르면 제4호 출석정지에 해당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p>
관련 학생 조치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판단 요소 심의 <p>(위원장) 다음으로 추가 판단 요소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침해 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이 가능하며,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이 가능합니다.</p> <p>(※ 간사는 추가 판단 요소와 관련된 사실 보고) (※ 가중·감경 사유 검토 및 상호 의견 개진 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감경·가중 여부 의결)</p> <p>(위원장) 본 시안의 경우 특별한 가중감경 사유가 없으므로 그대로 출석정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p> <p>(위원들) 없습니다.</p> <p>(위원장) 출석정지로 의결한 경우 출석정지 일수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출석정지 일수에 관하여 위원 상호 의견 개진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출석정지 일수 의결></p> <p>(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출석정지 일수는 5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p> <p>(위원들)</p> <p>(위원장)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일수는 5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p>



절차	세부 진행 발언
관련 학생 부가 조치 여부 심의	<p>(위원장) 다음으로 부가조치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침해 학생 선도를 위해 부가적으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p> <p><위원 상호 의견 개진 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부가조치 여부 및 시간 의결></p> <p>(※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부가조치 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시간도 함께 의결하며, 보호자의 참여시간도 의결)</p> <p>(※ 전학 조치 시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시간도 함께 의결)</p> <p>(위원장) 출석위원 ○명 중 ○명의 찬성으로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시간, 보호자에 대하여 특별교육 ○시간을 부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p>
관련 학생 조치 최종 의결	<p>(위원장) 위원님들의 심의의결 내용을 종합한 결과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 ○시간으로, 보호자에 대하여는 특별교육 ○시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p> <p>(위원들) 없습니다.</p> <p>(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에 대하여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 ○시간으로, 보호자에 대하여 특별교육 ○시간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p>
피해 교원 보호 조치 권고	<p>(위원장) 지금부터 피해교원에게 추가로 필요한 보호조치에 관한 권고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간사는 학교장이 기 실시한 보호조치와 추가 가능한 보호조치 유형 설명)</p> <p>(위원 1) 피해교원 ○○○은 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지원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p> <p><위원 상호 의견 개진 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추가 보호조치 권고안 의결></p> <p>(위원장) 위원님들 간 논의에 따라 피해교원 ○○○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지원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p> <p>(위원들) 없습니다.</p> <p>(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피해교원 ○○○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는 출석위원 ○명 중 ○명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p> <p>(보호조치 내용 낭독 : 피해교원 ○○○에 대해 추가로 심리상담 지원을 권고한다.)</p> <p>(의사봉)</p>
폐회 선언	(위원장)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 중 알게 된 당사자의 사생활 등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학년도 ○○학교 제○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이상의 시나리오는 상황에 따라 수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진행 시나리오<침해 관련자가 학부모 경우 예시>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시작전	회의 자료 준비 및 출석위원 확인
개회 선언	<p>(간사) 안녕하세요. ○○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간사 ○○○입니다. 지금부터 ○○○○학년도 ○○학교 제○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p> <p>(위원장) 간사께서는 성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p> <p>(간사) 재적위원 ○명 중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p> <p>(위원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재적위원 ○명 중 3분의 2 이상인 ○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학교 제○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p>
위원장 인사말	(위원장)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교원의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통한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학교교권보호 위원회의 목적과 규정에 따라 올바른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	(위원장) 오늘 심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번호 2000-OO, A교사와 B학부모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제척 · 회피 안내	<p>(위원장) 위원의 제척·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6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라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또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의무가 있습니다.</p> <p>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피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위원들) 없습니다.</p>
주의 사항 안내	(위원장)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중 육설, 폭언, 폭행 등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회의 진행 과정은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녹취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 조사 보고	<p>(위원장) 이번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p> <p>(간사) 사안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월 ○일 ○○에서 발생하였습니다. B학부모가 수업 중이던 A교사의 ~~~하였습니다. ○월 ○일 해당 교원 및 목격자인 C학생의 진술이 이루어졌고, ○월 ○일 B학부모의 진술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증거로 A교사에 대한 진단서가 제출되었습니다.</p> <p>(※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가 있는 경우 요약 보고)</p> <p>※ 당사자 사이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간사) A교사와 B학부모는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한 점에서 주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A교사는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B학부모는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관련 증거로 ~이 제출되었습니다.</p> <p>(간사) 양측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의 의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p>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쟁점 사항 확인	<p>(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원치 않으므로 이번 회의의 주요 쟁점 사안은 당사자의 주장 중 상반된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피해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에 대한 파악으로 요약됩니다.</p>
질의 응답	<p>(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나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간사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피해 교원 진술	<p>(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위원 동의) 다음으로 피해교원의 진술을 듣고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해당 교원을 입장시켜 주십시오.</p> <p style="text-align: center;"><대기 장소에 있던 피해교원 입장></p> <p>(위원장)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입니다.</p> <p>(피해교원) 먼저, 기피신청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와 관련해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기피신청 할 위원이 있습니까? (※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 다음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p> <p>다음은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관련 내용을 잘 듣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p> <p>(사안 설명) 이상입니다.</p> <p>(간사) 선생님께서는 간사가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p> <p>(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본 사안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질문 또는 필요한 발언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질의 응답></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p>※ 주요 질의 및 확인 내용</p><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해행위 사실 확인(특히, 학생 및 보호자의 주장과 다른 경우)- 기본 판단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관계회복 정도)- 부가적 판단요소(임신, 장애 여부)- 그 밖에 선도·교육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div> <p>(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위원 동의) 선생님께서는 이 사안과 관련한 요구 사항 등을 포함하여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학부모에 대한 의견 및 보호조치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전술)</p> <p>(피해교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일주일 내에 서면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퇴장하셔야 합니다.</p> <p>(위원장) 도 좋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피해교원 퇴장></p>

I. 교육활동 침해행위

II.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 수단

III. 교권보호위원회

IV.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 방안

V. 교원치유지원센터(교원돌봄센터) 운영

부록

절차	세부 진행 발언
	<p>(위원장) 다음으로 침해 관련 학부모의 진술을 듣고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관련 학부모를 입장시켜 주십시오.</p> <p style="text-align: center;"><대기 장소에 있는 침해 관련 학부모 입장></p> <p>(위원장)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p> <p>(학부모) 저는 ○○○입니다.</p> <p>(위원장) 먼저, 기피신청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와 관련해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기피신청할 위원이 있습니까?</p> <p>(※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p> <p>다음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유타,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p> <p>다음은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관련 내용을 잘 듣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p> <p>(사안설명) 이상입니다.</p> <p>(간사) ○○○학부모님은 간사가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십시오.</p> <p style="text-align: center;"><관련 학부모 진술></p> <p>(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p>
관련자 진술	<p>※ 주요 질의 및 확인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해행위 사실 확인(특히, 피해교원과 주장이 다른 경우) - 기본 판단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관계회복 정도) - 부가적 판단요소(장애 여부) - 그 밖에 선도·교육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위원장)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p> <p>(학부모) (마지막 진술)</p> <p>(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조치결정은 일주일 안에 학부모님의 주소지로 서면통지될 것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관련 학부모 퇴장></p>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사실 심의	<p>(위원장) 지금까지 침해 관련 학부모의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필요시 간사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대한 자료 제공,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 및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중 교육활동 침해유형 참고)</p> <p>(※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관련 사실 인정 및 해당 사실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의)</p>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피해 교원 보호 조치 권고	<p><위원 상호 의견 개진></p> <p>(위원장) 지금까지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p> <p><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p> <p>(위원장) 해당 시안은 출석위원 ○명 중 ○명의 찬성으로 「교원자치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p>
	<p>(위원장) 지금부터 피해교원에게 추가로 필요한 보호조치에 관한 권고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간사는 학교장이 기 실시한 보호조치와 추가 가능한 보호조치 유형 설명)</p> <p>(위원 1) 피해교원 ○○○은 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지원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p> <p><위원 상호 의견 개진 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추가 보호조치 권고안 의결></p> <p>(위원장) 위원님들 간 논의에 따라 피해교원 ○○○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지원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p> <p>(위원들) 없습니다.</p>
	<p>(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피해교원 ○○○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는 출석위원 ○명 중 ○명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p> <p>(보호조치 내용 낭독 : 피해교원 ○○○에 대해 추가로 심리상담 지원을 권고한다.)</p> <p>(의사봉)</p>
	<p>(위원장) 긴 시간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 중 알게 된 당사자의 사생활 등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학년도 ○○학교 제○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p>
	※ 이상의 시나리오는 상황에 따라 수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I. 교육활동 침해행위

II.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시법적 구제 수단

III. 교권보호위원회

IV.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 방안

V. 교원치유지원센터(교원돌봄센터) 운영

부록

마. 사안 종결 단계

(1) 조치의 통지

- 위원회가 조치를 의결하면 위원장은 자체 없이 의결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통보
- 의결서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시
- 학교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결과통지공문에 결과통지서 및 의결서를 첨부하여 각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결과 통지

(2) 조치기한[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1~5호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학교장 조치 결과 통보
6호	■ 해당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날부터 ※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종료일부터 계산	14일 이내 (이수 또는 치료 받은 후 14일 내 전학 절차 진행 시작)
7호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학교장 조치 결과 통보

*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모든 조치에 대해 7일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 시 유의사항> [교원지위법 제18조]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시 한 가지 조치만 가능(1~7호 중)
 - 단, 6호(전학)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함
 - 1, 2, 4, 5호 부가조치로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 가능
 - 교원지위법 제18조제2, 3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기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이 정한 기관
 - 보호자 참여 필수(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심리치료 미 참여한 경우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300만원)
 - 3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와 1, 2, 4, 5, 6호에 부가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다름
 - 3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육감이 정한 기관 및 학교 내의 전문상담사 또는 외부 상담센터도 가능
 - 1, 2, 4, 5, 6호에 부가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교육감이 정한 기관만 가능

<조치내용 예시>

- ▶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 2호(사회봉사) 5시간 및 교원지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심리치료)
학생 4시간, 보호자 1시간 조치 (○)
- ▶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 3호 특별교육(심리치료) 5시간, 보호자 1시간 조치 (○)



(3) 후속조치

- 당사자가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
- 피해교원에게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 회복과 치유에 필요한 조치
- 재발방지조치 및 추수지도
- 당사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복귀 지원
- 조치결과에 이의제기 시 불복절차 안내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지역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및 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5)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참여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은 이를 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에 통보

⑧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생이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게 된 경우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에 반드시 함께 참여하여야 하는지요?

A 「교원지위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침해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해야 함
-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은 「교원지위법」 제21조에 따라 보호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300만원)
- 보호자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참여 여부 확인 후 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로 공문발송

(6) 조치에 대한 구제 절차

가) 인천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청구

- 전학(6호) 또는 퇴학(7호) 처분에만 해당
-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가능(재심 청구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집행은 유보)
-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가능

나) 행정심판

-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시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가능
- 행정심판은 전학·퇴학처분을 포함하여 모든 조치에 대해 청구 가능

다) 행정소송

- 관할 법원에 취소소송(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치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또는 무효 확인 소송 제기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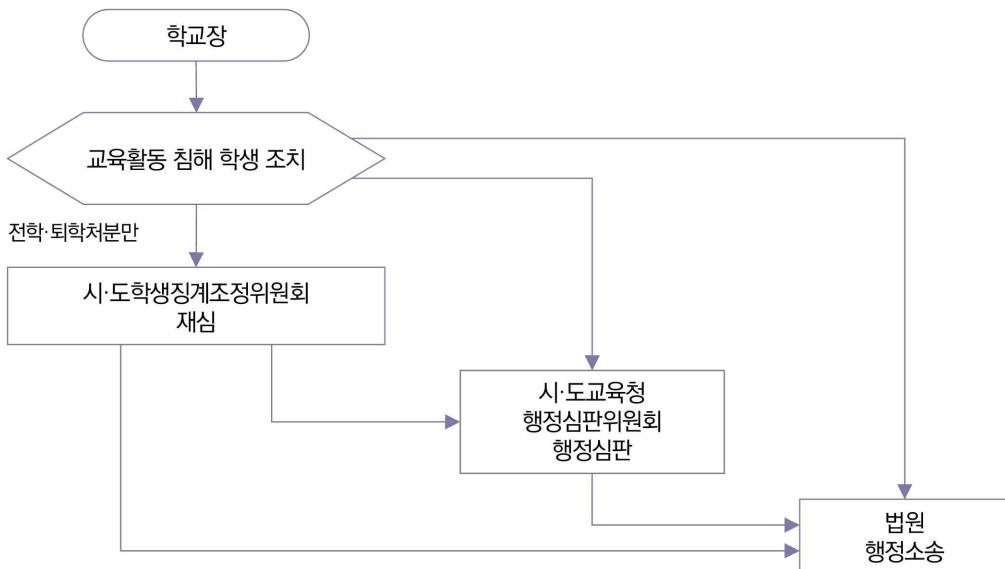
※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시

-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만으로 당연히 조치 집행이 유보되는 것은 아님 (예-전학 조치의 경우 절차 진행)
-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 조치 집행이 정지됨

라) (사립학교) 인천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을 청구(전학또는 퇴학처분에 한정)하거나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가능

마) 조치에 대한 구제절차 흐름도

- 국·공립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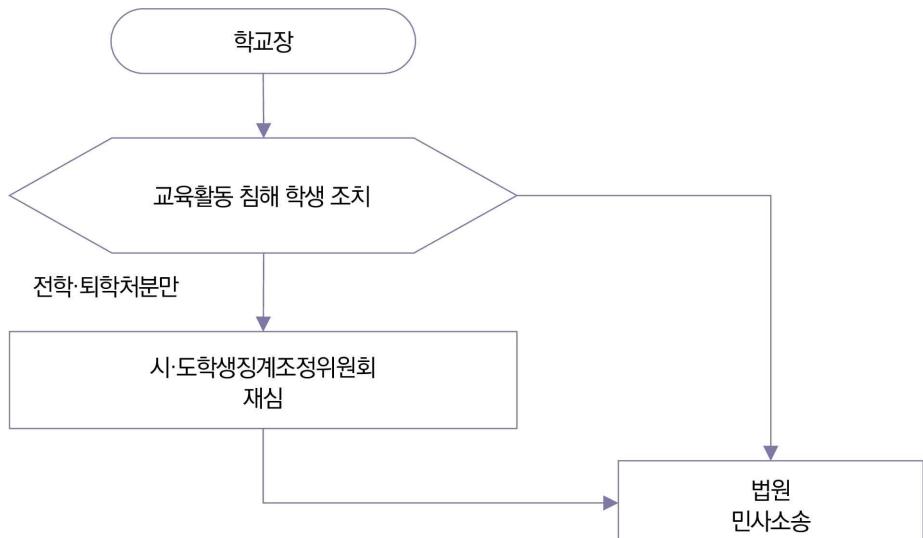


<국·공립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에 대한 구제절차 흐름도>



2) 사립학교

- 사립학교의 경우 인천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전학 또는 퇴학처분에 한정)하거나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가능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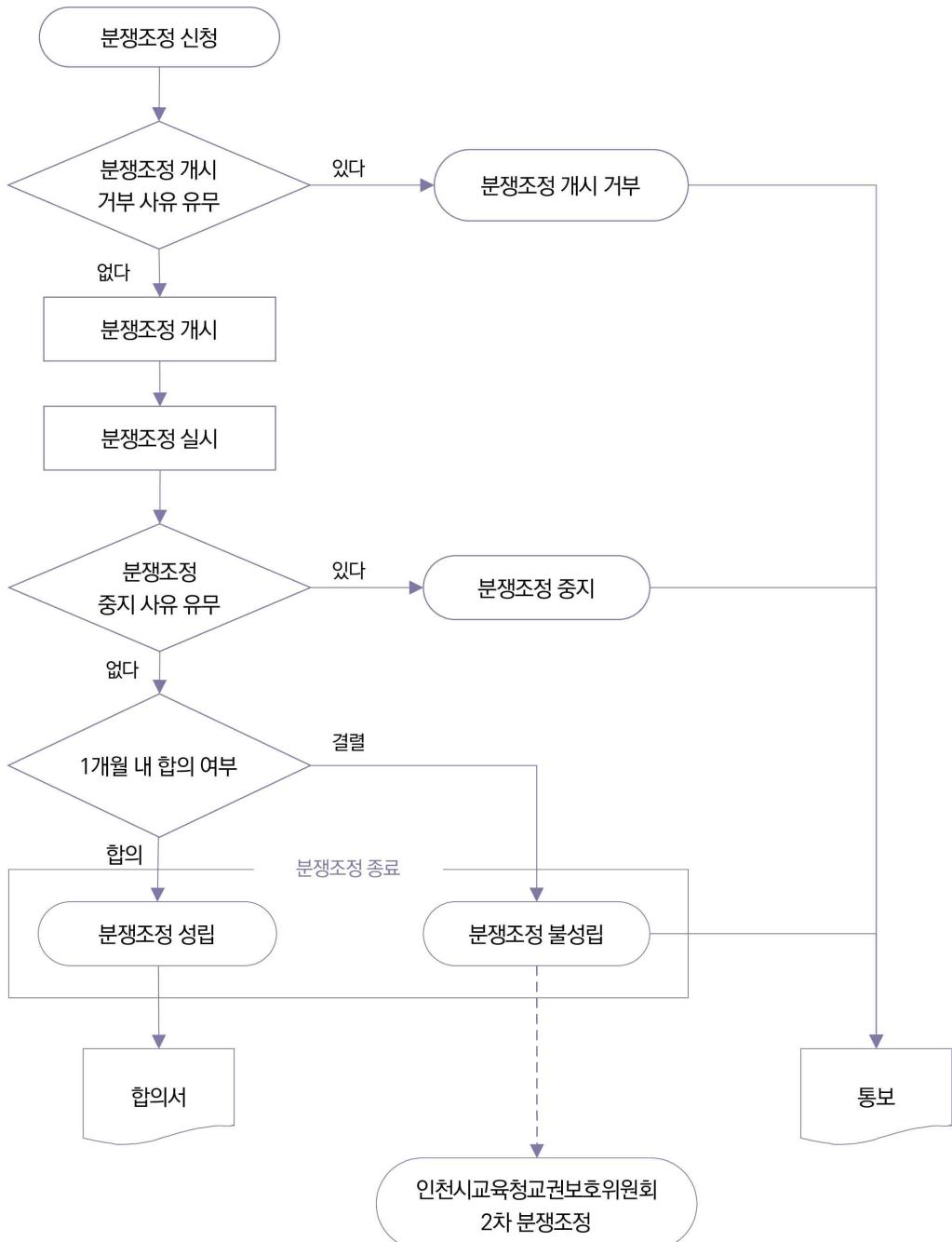


ⓐ 18 피해 교원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아님”으로 판단하여 피해 교원이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사립학교 교원은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음
● 그러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피해교원이 더 가중한 조치를 요구하는 이의제기는 할 수 없음

18 다만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의 교장이 학생에 대하여 한 징계는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판례로 대구고법 2017. 11. 10. 선고 2017나22439 판결 참조.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19처리 단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흐름도]

19 위원회가 조정자가 되어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마련해 화해로 이끄는 절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단계별 분쟁조정 절차 개요〉

절차	세부 사항	관련 서식
분쟁조정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절차 안내 ■ 분쟁조정 의사 확인 ■ 당사자 중 일방이 분쟁조정 신청 ■ 신청기한 : 사안발생일로부터 1개월 ■ 사안발생보고에 분쟁조정 신청 여부 표시 	■ 신청서(서식 14)
분쟁조정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조정 개시 거부 및 중지 사유 확인 ■ 신청일로부터 21일 이내 분쟁조정 개시 ■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일시 및 장소 통지 ■ 출석 불능 시 분쟁조정 연기 신청 → 분쟁조정 기일 재지정 ■ 필요한 경우 분쟁담당자 지정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 	■ 출석통지서(서식 15)
<p><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분쟁의 성질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정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분쟁조정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당사자 의견 및 요청사항 청취 ■ 조정안 제시 등 조정 노력 	
분쟁조정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조정 성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서 작성 및 서명 또는 기명날인 - 당사자에게 합의서 통보 ■ (분쟁조정 불성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분쟁 조정 종료 가능 -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불성립 통보 - 인천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 2차 분쟁조정 신청 가능 안내 -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정안 권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서(서식 16) ■ 회의록(서식 17) ■ 2차 분쟁조정 신청서 (서식 22)

* 관련 서식의 경우 부록 참고

(1) 분쟁조정의 의의

- 위원회가 조정자가 되어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마련해 화해로 이끄는 절차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 분쟁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급적 학교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
- 특히 보호자 등 학생이 아닌 사람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적용 가능

(2) 분쟁조정절차

(가) 분쟁조정의 신청

- 분쟁조정을 원하는 당사자 일방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나) 분쟁조정의 개시

-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가급적 21일 이내 분쟁조정 시작
- 양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일시 및 장소 통보
-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불출석할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 기일 재지정

(다) 분쟁조정의 개시 거부 및 분쟁조정의 중지

<분쟁조정 개시 거부 및 중지 사유>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분쟁의 성질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조정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 위 사유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중지 가능

-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사유를 양당사자에게 통보

(라) 분쟁조정의 실시

-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 가능
- 진술 청취 후 양보·화해·합의하도록 유도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조정 시도

(마) 분쟁조정의 종료

- 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② 분쟁조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분쟁조정 종료 가능



- 분쟁조정을 종료한 경우 그 사유를 양당사자에게 통보
 - ①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당사자에게 통보
 - 합의는 민사상 화해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고 권리를 승인하는 것이 되며 종전의 법률관계를 주장하지 못함

〈합의서의 기재사항〉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가. 분쟁의 경위
 -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 분쟁조정 종료 사유를 양당사자에게 통보
-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한 행위 또는 행위의 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 권고 가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시 주의사항〉

- 사안조사 단계에서 당사자의 분쟁조정 의사 확인
- 양당사자가 모두 분쟁조정에 동의한 경우 분쟁조정 개시
- 학생의 경우에도 분쟁조정 가능
- 분쟁조정 개시 거부 및 중지 사유가 있는지 확인
- 합의사항에는 사과나 화해, 손해배상, 재발방지 약속 등이 가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시나리오 예시》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시작 전	회의 자료 준비 및 출석위원 확인
개회 선언	(간사) 반갑습니다. ○○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간사 ○○○입니다. 지금부터 ○○○○학년도 ○○학교 제○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께서는 성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재적위원 ○명 중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재적위원 ○명 중 3분의 2 이상인 ○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학교 제○회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인사말	(위원장)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제19조에 따라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목적과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분쟁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	(위원장) 오늘 조정할 안건은 사안번호 2000-OO, A교사와 B학부모가 관련된 사안입니다.
제척 · 회피 안내	(위원장) 위원의 제척·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6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라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또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피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
사안 조사 보고	(위원장) 이번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시안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시안은 지난 ○월 ○일 ○○에서 발생하였습니다. C학생의 아버지/어머니인 B학부모가 수업 중이던 A교사에게 “○○○○”이라고 욕설을 하고 팔을 휘둘러 A교사의 허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습니다. ○월 ○일 해당 교원 및 목격자인 D학생과 E교사의 진술이 이루어졌고, ○월 ○일 B학생의 진술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증거로 A교사에 대한 진단서가 제출되었습니다. (※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가 있는 경우 요약 보고)
	<p>※ 당사자 사이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p> <p>(간사) A교사와 B학부모는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한 점에서 주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A교사는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B학부모는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관련 증거로 ~~이 제출되었습니다.</p>
	(간사) 피해교원이 ○월 ○일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B학부모도 분쟁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질의 응답	(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나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간사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분쟁 조정	(위원장) 피해교원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먼저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입장시켜 주십시오 <대기 장소에 있던 피해교원과 학부모 입장> (위원장) 신청인의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해교원) 저는 ○○○입니다. (위원장) 피신청인의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부모) 저는 ○○○입니다. (위원장) 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상호 양해를 통해 교육활동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입니다. 양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절차를 원하신 만큼 마음을 열고 미래지향적 조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피신청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와 관련해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기피신청 할 위원이 있습니까? (피해교원) 없습니다. (위원장) 피신청인은 기피신청 할 위원이 있습니까? (학부모) 없습니다.
	(※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
	(위원장) 이번 분쟁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및 요청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께서 의견 및 요청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해교원)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가 크고, 재발이 우려됩니다. 보호자께서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치료비를 지급해주셨으면 합니다. (학부모) 이번 일에는 학부모에 대한 교사의 잘못된 상담방식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담방식을 개선해 주시고, 이번 일로 학생이 앞으로 학교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과거의 문제보다는 관계회복 및 장래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 발씩 양보가 필요합니다. 상호수용을 전제로 학부모님께서는 선생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치료비 ○○○원을 지급하고 선생님께서는 상담방식을 개선하고 향후 학생이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양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없으신가요?
	<피해교원, 학부모 동의>
	(위원장) 이로써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양당사자가 동의한 조정안에 대하여 분쟁조정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겠습니다.
	<분쟁조정 합의서 작성 및 서명·날인>
	(위원장) 양 당사자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세부 진행 발언
	<p>(위원장) 과거의 문제보다는 관계회복 및 장래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 빌씩 양보가 필요합니다. 상호수용을 전제로 학부모님께서는 선생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치료비 ○○○원을 지급하고, 선생님께서는 상담방식을 개선하고, 향후 학생이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양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없으신가요?</p> <p><피해교원, 학부모 부동의></p> <p>(위원장)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이 있어 조정이 성립하지 못하였음을 선언합니다.</p> <p>(의사봉)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양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은 다시 조정을 원할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 위원회에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 당사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p> <p><피해교원과 학부모 퇴장></p> <p>(위원장)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조정안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위원1) 학부모님께서는 선생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치료비 ○○○원을 지급하고, 선생님께서는 상담방식을 개선하고, 향후 학생이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조정안을 권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p> <p>(위원2) 동의합니다.</p> <p><위원 상호 의견 개진 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정권고안 의결></p> <p>(위원장) 위원님들 간 논의에 따라 조정안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p> <p>(위원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조정안은 출석위원 ○명 중 ○명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 습니다.</p> <p>(조정권고안 내용 낭독: 학부모 ○○는 교사 ○○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치료비 ○○○원을 지급하고, 교사 ○○은 상담방식을 개선하고, 향후 학생이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의사봉)</p> <p>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 중 알게 된 당사자의 사생활 등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학년도 ○○학교 제○차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p>
분쟁 조정 불성립	



4.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절차별 대응 점검표

절차	점검 내용	점검 (○, ×)
사안 접수 및 응급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활동 침해행위 처리 대장 기록(접수) [서식1] 학교교권보호책임관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서식2] 피해 교원의 안전 조치 및 침해 학생의 진정 조치 	
피해교원 보호조치 및 사안 조사·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안보고 (일반사안:서식 3-1)(중대사안:서식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초·중: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와 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동시 공문 보고 - 고·특수·기타학교: 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로 공문 보고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중대한 사안[서식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폭행으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 성폭력범죄 행위인 경우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진단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피해 교원 보호조치 및 복무 관련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휴가(최대5일), 공무상병가, 병가 등 -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 - 피해교원 요청시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의 법률 상담 제공 교육활동 침해행위 '학생'인 경우 학부모(보호자)에게 사안 안내 피해 교원, 침해 측 경위서(진술서) 작성[서식4]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 및 목격한 학생 파악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참석 요청, 출석통지서 내부결재 후 개최 3일~10일 전까지 통지 (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참고)[서식5,6,7]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서식8]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시 피해교원 및 침해 학생(보호자) 등의 진술 기회 부여[서식9]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시 교육활동 침해 여부 심의 의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시 피해 교원 보호조치 심의 의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시 침해학생 또는 침해자 조치 심의 의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의결서[서식10], 회의록 작성[서식1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후 당사자에게 결과를 서면 통보(등기우편 발송) 및 불복절차 안내[서식1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처리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처리 대장에 정리[서식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보고(공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처:사안 보고와 동일 [서식13] 	
조치 이행 및 사후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교육 및 심리 치료 부가 조치 시 보호자 참여 여부 확인 결과 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로 공문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 단위의 대책 수립 	

I. 교육활동 침해행위

II.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 수단

III. 교권보호위원회

IV.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 방안

V. 교원치유지원센터(교원돌봄센터) 운영

부록

2023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교원치유 지원센터 (교원돌움터) 운영



Educational Activity Protection Manual

V

교원치유지원센터(교원돌움터) 운영



1. 기능 및 역할

가. 법적 근거: 교원지위법 제17조제1항,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0조

나. 기능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치유·회복·복귀 지원
- 교육활동 침해 피해 학교 및 교원에 대한 심리 상담·치료 및 법률 상담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교육활동 중 심리적 소진 지원
- 교육활동 침해 예방 활동 지원 등

다. 역할

구분	주요 역할	전화번호
센터장(장학관)	교원치유지원센터(교원돌움터) 업무 총괄	
초등 장학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업무 및 치유지원(유·초등)	550-1782
중등 장학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업무 및 치유지원(중등·특수·각종)	550-1781
전문상담사1	교원의 심리상담, 심리검사 등	550-1783
전문상담사2		550-1784
변호사	교권 관련 법률 상담 및 자문 지원 등	550-1785

라.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지원 개요





2. 주요 운영 내용

추진과제	추진내용	운영 시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교원돌움터) 운영	연중
	인천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연중
	2023년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연중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연중
	교원돌움터 홈페이지 운영	연중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강화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 실태조사 실시	3월, 9월
	2023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보급	5월
	교육활동 보호 현장자문단 운영	연중
	학교교권보호책임관(유초중고등학교 원감 및 교감) 연수	3월
	학교로 찾아가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교육활동 보호 교실	연중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치유회복 지원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부담	연중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맞춤형 지원	연중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지원	연중
	맞춤형 힐링캠프 「교원온쉼표」 운영	연중
	맞춤형 힐링캠프 운영	연중
	마음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연중
학교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원 존중문화 확산	교권존중문화조성사업(교권존중프로젝트, 사제동행동아리) 운영	연중
	학교구성원 상호 존중 주간 운영	연중(4회)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존중문화 확산 홍보	연중

I. 교육활동 침해행위

II.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 수단

III. 교권보호위원회

IV. 교육활동 침해 사건 단계별 대응 방안

V. 교원치유지원센터(교원돌움터) 운영

부록



3. 법률 지원

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교원지위법 제14조의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법률 상담 및 자문

- 대상: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원
- 내용: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및 해당 학교의 요청에 따라 유선·방문·서면 법률상담 및 자문 제공
- 신청방법:

방법	제출처
공문 *법률자문자문의뢰서 【서식24】 작성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전화 홈페이지 *인천시교육청홈페이지하단-교원돌움터-원스톱지원-법률자문 의뢰서제출	☎ 032-550-1785 http://www.ice.go.kr/boardCnts/list.do?searchStr=&boardID=3900&depart=0&m=160105&seq=ice

나. 교원배상책임보험

- 가입대상

- 인천관내 국·공·사립학교 교원(기간제 교원, 학력인정학교 교원, 휴직교원 포함), 강사(시간강사, 유치원방과후 및 특수학급 종일제 강사) 및 교육전문직원

- 보장내용

- (민사보상) 담보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집단따돌림 및 교원의 체벌, 인격 침해 등 포함)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 배상금
- (형사보상) 담보업무 수행으로 피보험자가 형사 고소·고발 및 피소 당한 경우(수사단계 포함) 형사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용 포함)
 - ※ 유죄판결 시 보장제외

- 신청방법

- 보험담당자와 유선 상담 후 보험 가동 여부 판단 후 지원 가능



4. 교원 치유 지원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 지원

[교원지위법 제15조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2019.12.11.시행)]

※ 치료비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교원지위법 제15조제5항)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
- 다만, 교육청이 부담하고 침해행위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 대상: 인천 관내 교원 중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로 의결된 경우 및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분쟁 조정 완료된 교원에 한함)

● 신청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 치료비 및 상담비

● 신청기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

● 신청방법: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공문 제출

● 제출서류: 교육활동 보호조치비용 신청서 【서식 21】, 병원 치료 영수증, 진단서, 신청인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사본, 교육감이 정한 전문 상담기관 상담 이용 시 상담 확인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 기타 필요한 요청 서류 등

● 지원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로 인한 신체치료비 및 심리치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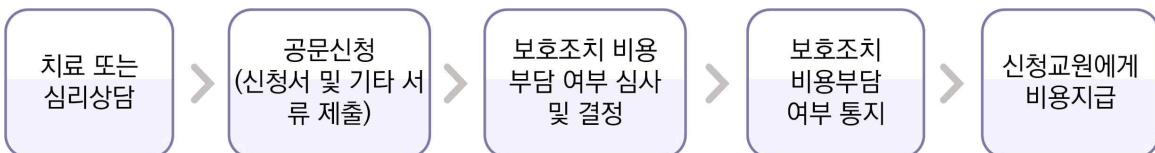
-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로 인한 심리상담비(단, 교육감이 정한 기관만 가능)

※ 단, 심리치료비와 심리상담비는 '나.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절차에 따라 교원돌움터에서 직접 지원 가능

● 지원한도: 1인당 200만원 이내

(교원돌움터 협약기관 지원 심리치료·상담비 포함 총 200만원 이내)

●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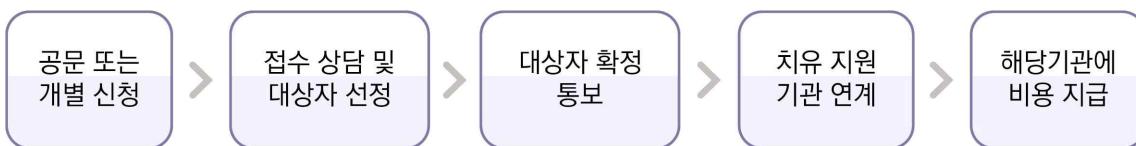
나.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 대상 및 신청 방법

대상	신청 방법	제출처
유초·중·고·각종 특수학교 교원(사립유치원 교원 제외) 중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및 교육활동 중 심리적 소진 교원	공문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서식 20】
	전화	☎ 032-550-1783~4
	메일	dodum@ice.go.kr
	홈페이지	https://url.kr/zrt6c8

- 개별 신청: 홈페이지(<https://url.kr/zrt6c8>) → 자료실(127)에 게시된 상담신청서, 동의서 작성
→ 원스톱 지원신청(심리상담)

- 연계 절차



● 협약기관 지원내용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협약기관 이용 비용(동시에 2개 이상의 협약기관 이용 불가)
- 지원 한도:
 - 교육활동 침해 교원: 1인당 200만원 이내 지원(예산 소진시 지원 종료)
 - 교육활동 소진 교원: 1인당 100만원 이내 지원(교직 생애 중 총1회 지원, 예산 소진시 지원 종료)
- 3주 이상 협약 기관(상담센터, 병원)불참시 상담(치료) 자동 종료
- 협약기관 연계시 교원돌움터 초기 면접상담 필수(사전 연락없이 초기 면접상담 예약일 불참시 대기자가 많아서 3개월 이후 상담 재예약)
- ※ 공무상 병가 확정 시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서 제출 필수(동일 예산에 의한 치료비 중복 지원 불가 규정에 의거 중복지원금 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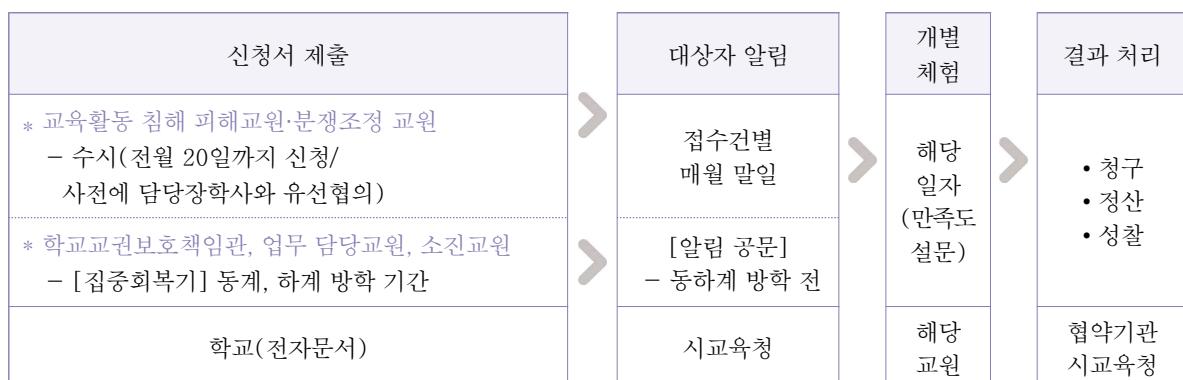


다. 교원 맞춤형 치유·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업명: ‘교원 온쉼표’
- 운영 기간:(집중회복기) 동계·하계 방학기간, (침해피해교원 집중지원기) 수시
- 대상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 교원 및 분쟁 조정 교원
 - 교육활동 보호 업무 교원, 교육전문직원
 - 교육활동 소진 교원
- 지원 내용과 방법
 - 위탁교육 협약 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중 선택한 개별 체험 지원
 - 치유비(협약기관별 1인 참가비 한도액 내) 지원, 초과비용 본인 부담
- 2023년 인천광역시교육청 협약 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연번	영역	기관명	소재지	비고
1	웰에이징 심신테라피	힐리언스 선마을	강원도 홍천군 서면 종자산길 122 (https://www.healience.co.kr)	
2	템플스테이	강화 전등사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 (http://www.jeondeungsa.org)	
3	자연명상 스테이	아침편지문화재단 명상치유센터 깊은산속 옹달샘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우성1길 201-61 (https://godowoncenter.com/)	
4	산림치유	국립횡성숲체원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777 (https://hoengseong.fowi.or.kr/)	
5	도시형힐링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송도동) (https://oakwoodpremier.co.kr/front/ko/opi)	

- 운영 절차 및 시기



- 문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교원돌움터 담당 장학사(☎ 032-550-1781)

라. 교원돌움터 네트워크 현황

● 심리치료 협약기관

연번	지역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1	동부	차지현정신건강의학과의원 8212001@naver.com	연수구 청능대로 109 5층 탑피온빌딩 5층	032-821-2001
2	동부	라온정신건강의학과의원 pjinsoh@naver.com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032-831-8906
3	동부	송도MAY정신건강의학과의원 songdomay@naver.com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157	
4	동부	새희망병원 joojh316@naver.com	남동구 남동대로 922번길 54	032-431-2555
5	동부	연세마음숲정신건강의학과의원 ysmsoup@gmail.com	남동구 논고개로 123번길 17 2층	032-425-3375
6	서부	인천참사랑병원 clh9111@daum.net	서구 원창로 240번길 9	032-571-9111
7	서부	아름드리정신건강의학과의원 comlove0302@naver.com	서구 완정로 172 서주빌딩 406호	032-568-7559
8	남부	황원준 신경정신과의원 tchunh@naver.com	미추홀구 경인로 399-1 리슈빌 C동	032-883-5000
9	남부	현대유비스병원 call81@naver.com	미추홀구 독배로 503	032-890-5600
10	남부	원병원 wonpsy1@naver.com	미추홀구 인하로 372, 남영빌딩	032-547-7114
11	북부	공감신경정신과의원 empty_sj@naver.com	부평구 부평대로 68	032-527-5070
12	김포	김포한누리병원 gphannuri@gmail.com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515-26	031-981-3000
13	부천	고운마음정신건강 의학과의원 mecju99@naver.com	부천시 길주로 137	032-329-1151



● 심리상담 협약기관

연번	지역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1	동부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하모니상담센터 harmonycsc@daum.net	남동구 석정로 543 성산효대학원대학교 3층	070-4361-7762
2	동부	연세지아 심리상담센터 kbr7441@naver.com	남동구 논현동 746-3 502호	032-435-1771
3	동부	삼성지음 심리상담센터 samsung_jieum@naver.com	연수구 신송로 154 송도더제니스 2층	032-833-0835
4	동부	나은마음 심리상담센터 jhk3971@naver.com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11번길 5	032-833-0099
5	동부	연세리봄심리상담센터 yonseirebom@naver.com	남동구 논고개로 114, 에이스타워 902호	032-201-0425
6	동부	잇다심리상담연구소 innerpeace929@daum.net	연수구 신송로 122, 608호	
7	동부	연세대 송도국제캠퍼스 easter@yonsei.ac.kr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8	동부	샘상담교육연구소 pagold@hanmail.net	연수구 송도문화로 28번길	032-812-8570
9	서부	나무솔 심리상담센터 namu-soul@naver.com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02번길 8	032-576-0030
10	서부	윤인석심리상담연구소 jeunne03@nate.com	서구 청라커넬로 252	
11	서부	지은심리상담센터 jieun-center@naver.com	서구 청라커넬로 260번길 11, 409호	032-562-2792
12	남부	이상희심리상담센터 gjsh45@naver.com	미추홀구 경원대로 865	032-422-4225
13	남부	한스심리상담센터 hanscec@naver.com	미추홀구 매소홀로 432	032-423-7940
14	북부	희망찬심리발달센터 mail@hopeful.co.kr	부평구 부흥로342 덕천프라자 5층	032-513-7005
15	북부	이화공감심리상담센터 ewha0508@gmail.com	부평구 길주로 659	032-508-5191
16	북부	다은심리상담센터 mindjourney99@naver.com	부평구 갈월서로 6, 대우빌딩 3층	032-505-7869
17	강화	웰트리심리상담센터 welltree403@naver.com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404번길 7, 403호	032-934-9348
18	부천	마음소풍 심리상담센터 maumsopoong@naver.com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37	032-323-1753
19	부천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 irpkorea2017@gmail.com	부천시 소향로 113 디아뜨갤러리 1차	032-321-7891
20	서울	지수(智/守) 심리상담센터 soomin68@empas.com	서울시 양천구 목동 동로 293	070-7766-0099
21	서울	연세공감 심리상담센터 yonseigg@daum.net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43-53	02-312-3132

I. 교육활동 침해행위

II.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시범적 구제 수단

III. 교권보호위원회

IV. 교육활동 침해 사건 단계별 대응 방안

V. 교원치유지원센터(교원돌봄센터) 운영

부록

● 맞춤형 치유·회복 프로그램 협약기관

연번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지역
1	부평구문화재단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032-500-2052	북부
2	풀잎문화센터	남동구 남동대로 709-1	032-464-0118	동부
3	남동소래아트홀	남동구 아암대로 1437번길 32	032-460-0565	동부
4	엘림아트센터	서구 크리스탈로 78 엘림존	032-289-4275	서부
5	전등사	강화군 전등사로 37-41	032-937-0152	강화
6	양평협동조합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쉬자파크길 193	031-770-1004~5	경기
7	국립횡성숲체원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777	033-340-6300	강원
8	행복공장 수련원 '빈 숲'	강원도 홍천군 남면 남노일로 674	(사무국) 02-6084-1016	강원
9	힐리언스 선마을	강원도 홍천군 서면 종자산길 122	033-434-2772	강원
10	아침편지문화재단 깊은산속옹달샘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우성1길 201-61		충청

부록

2023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1.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규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예시)
3. 각종서식
4. 교육활동 침해 외 사안에 대한 대응 방안



Educational Activity Protection Manual

1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094호, 2022. 12. 27.,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487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 044-203-6345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14.]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14.]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법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5조(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운영한다.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查)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 12. 3.>

④ 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08. 3. 14.]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4.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6.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 12. 27.>

[전문개정 2008. 3. 14.]

제8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8조의3(위원의 신분 보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장기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8조의4(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10조(소청심사 결정 등) 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9. 4. 23.>

1. 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
- ③ 처분권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한다)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 <신설 2021. 3. 23.>

⑥ 소청심사의 청구·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전문개정 2008. 3. 14.]

[제목개정 2021. 3. 23.]

제10조의2(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5로 이동 <2021. 3. 23.>]

제10조의3(구제명령)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구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구제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3. 23.]

제10조의4(이행강제금)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제10조의3에 따른 구제명령(이하 이 조에서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⑤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구제명령을 받은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청사건의 심사·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검정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경우

- ②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결정으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소청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10조의2에서 이동 <2021. 3. 23.>]

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①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시·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나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14.]

제12조(교섭·협의 사항)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는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13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교섭·협의 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되 교육부는 7명 이내, 시·도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
 2.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4.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14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4조의3(특별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4. 16.>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자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2019. 12. 10.>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

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 ⑥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본조신설 2016. 2. 3.]

제16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 · 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16.>

- ② 관할청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16.>

[본조신설 2016. 2. 3.]

제16조의2(실태조사) ① 관할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6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 · 학생 ·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 · 학생 · 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7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3.]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④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⑦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⑧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을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4. 16.>

⑨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19. 4. 16.]

제18조의2(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관할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
 - 가.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 나.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 4. 16.>]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6. 2. 3.]

[제19조에서 이동 <2019. 4. 16.>]

제21조(벌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소청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 3. 23.>]

제2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21조에서 이동 <2021. 3. 23.>]

부칙 <제19094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 직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를 수행 중인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487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 044-203-6345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8. 2.]

제2조(교원의견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6. 8. 2., 2019. 10. 15.>

1.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운영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3.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4.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 상담
5.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6. 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9. 10. 15.>

[본조신설 2013. 2. 5.]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인 경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6. 9.]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20. 6. 9.>]

제2조의4(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가.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부장관

나.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② 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상권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으로서 관할청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15조제5항 본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그 밖에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관할청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관할청은 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보호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9. 10. 15.]

[제2조의3에서 이동 <2020. 6. 9.>]

제3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2. 5., 2019. 10.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③ 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에의 참여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9. 10. 15.>

제6조의2 삭제 <2019. 10. 15.>

제6조의3 삭제 <2019. 10. 15.>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 · 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 · 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 · 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이나 문화시설이용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4. 29.]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① 관할청은 교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비용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4. 4. 29.]

제9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현황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현황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실태조사는 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연 2회 이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9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 다.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다.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 라.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10. 15.]

제10조(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 관할청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설립한 기관
- 라. 그 밖에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춘 상담실이 있을 것

- 가. 인터넷 이용시설 및 전화 등 상담·자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나.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상담·자문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본조신설 2016. 8. 2.]

제11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2.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5.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의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2.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3.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치의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학 조치를 할 때에는 초등학교 · 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
- 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⑦ 교육감은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 · 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전문개정 2019. 10. 15.]
- 제11조의2(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원(「도서 ·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 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사의 출입문 보안장치, 방범창,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비상벨 등 안전장치 설치 현황
 2.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
 3. 교원과 경찰관서 간의 긴급연락체계 등 안전망 구축 현황
 4. 교원의 성별 현황
 5. 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시설 안전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④ 관할청인 교육감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12조(시 · 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 · 도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 · 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시 · 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 12. 31.>

1. 해당 시 · 도 의회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교육 의원을 포함한다)
 2. 해당 시 · 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 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 · 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해당 시 · 도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 · 도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시 · 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 · 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시 · 도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 · 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9. 10. 15.]

제13조(시 · 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 ① 시 · 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관한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해당 사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14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0. 15.]

제15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2. 31>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 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1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 등)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17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 보호조치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 보고의 접수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고발

4. 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구상권의 행사

5.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6.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참여 조치

7.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본조신설 2019. 10. 15.]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 10. 15.]

부칙 <제31349호, 2020. 12. 31.>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중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도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5호 중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시행 2023. 3. 23.] [교육부고시 제2021-26호, 2021. 10. 1.,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94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부칙 <제2023-12호, 2023.03.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

① 기본 판단 요소

구분	침해행위 심각성	침해행위 지속성	침해행위 고의성	구분	침해학생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 관계회복 정도
매우높음	5	5	5	높음	0	0
높음	4	4	4	보통	1	1
보통	3	3	3	낮음	2	2
낮음	2	2	2	없음	3	3
매우낮음	1	1	1			
없음	0	0	0			

② 추가 판단 요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용 여부 의결

구분	추가 판단 기준	조치 내용
감경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
가중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독 조치 또는 1호·2호·4호·5호·6호와 병파 가능

※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7호 ⇌ 6호 ⇌ 5호 ⇌ 4호 ⇌ 2호 ⇌ 1호

※ 교내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 결정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구분	점수	조치 내용
조치 없음	0~4	-
교내선도	1호	5~7 학교에서의 봉사
외부기관 연계선도	2호	8~10 사회봉사
	3호	-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교육 환경 변화	교내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교외	6호 전학
		7호 퇴학

【전학·퇴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위의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5호, 2022. 12. 13.,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044-203-6481

교육부(대학운영지원과-대학교원) 044-203-6938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教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시행 2023. 1. 20.] [교육부예규 제431호, 2023. 1. 20.,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497

제8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학교 등)의 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형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08, 일부개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암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 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디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 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 중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8조(중손괴) ①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2조(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7~8

법무부(전자감독과) 02-2110-3839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빈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71호, 2022. 6. 10.,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스팸) 02-2110-1522, 15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 통신과금관련) 044-202-66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 – 해킹 등 침해대응 관련) 044-202-6461, 6462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4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불법정보 및 청소년보호 관련) 02-2110-1564, 1549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이용자정책과—본인확인제 관련) 02-2110-1521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 ·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 멸실 · 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 · 화약류(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教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예시)

※ 교원지위법 제19조제2항,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 15조, 16조를 참고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은 그대로 적용)

○○학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른 「○○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본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 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본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지자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및 자격상실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교권보호책임관' 1인을 두며, 학교 교권보호책임관은 제3조제2항 제1호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사안조사, 회의 진행, 회의록 작성 등)를 위해 학교장이 지명하는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제4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을 겸하며,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기 이전에 사퇴를 할 경우 위원으로서 잔여임기는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및 이 규칙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자동 자격상실)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 위원이 자녀가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다만 자녀가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7조(회의소집 및 의결)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을 연장하여 개최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되, 위원회 개최일 3일 내지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할 경우 해당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는 '당사자'라 한다)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⑥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당사자의 출석)

-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내지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9조(분쟁 조정)

- ① 위원회는 당사자 모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분쟁 조정이 성립한 경우 분쟁 조정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분쟁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 ④ 위원회는 피해교원이 심의를 원하지 않아 분쟁 조정이 불성립한 채로 종료된 경우 양 당사자가 원할 시 위원회에서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교육청교권보호 위원회에 다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 통보 및 결과의 통지 등)

- ① 위원장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심의가 끝난 날부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준용하여 기일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 등)

-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 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 (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 ① 피해교원 보호조치 유형 [교원지위법 제15조제2항]
 - 심리상담 및 조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② 특별휴가 [교원지위법 제14조의3]
 - 5일의 범위 내 부여 가능
- ③ 공무상 병가제도
 - 근거: <2023 교원인사 실무도우미> 병가
 - 180일 이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 후 승인 결정에 따름
 - 6일 이내: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가 가능

제14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조치 내용	1호: 학교에서의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처분(의무교육 대상자에는 적용 안 됨)
조치 결정 시 판단 요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의 관계 회복 정도
	침해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에 따라 감경 여부 결정 피해교원의 임신·장애 여부 및 그 정도에 따라 가중 여부 결정

제15조(규칙 외 사항 등) 제3조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를 따르며, 이 규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내용은 「교원지위법」, 「교원지위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23. ○. ○. 부터 시행한다.

서식1

교육활동 침해행위 처리 대장

※ '구분'란에는 학생, 학부모 등 기입/ '통지일'은 피해교원 및 침해자에게 결과 통지한 날짜
※ 사안처리결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가 교육활동 침해 인정(○)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

※ 사안처리결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가 교육활동 침해 인정(○)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



서식2

피해교원 작성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신청서

서식3-1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보고서(교육청 일반사안 제출용)

학교명			
사안발생일			
사안신고(접수)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예정일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신고인			
피신고인			
교육활동 침해유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input type="checkbox"/> 상해와 폭행의 죄(제1항제1호) <input type="checkbox"/> 협박의 죄(제1항제1호) <input type="checkbox"/> 명예에 관한 죄(제1항제1호) <input type="checkbox"/> 손괴의 죄(제1항제1호) <input type="checkbox"/> 성폭력범죄(제1항제2호) <input type="checkbox"/> 불법정보유통행위(제1항제3호) <input type="checkbox"/>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업무방해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성적 괴롭힘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 부당한 간섭(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제1항제4호) ()		
※ 해당 침해행위 유형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신고인	피신고인	
분쟁조정 신청여부	신청() 미신청()	신청() 미신청()	
침해 내용 (일시, 장소, 사안 경과 등)			
피해교원 조치내용 (응급조치)			
작성자(업무담당자)	확인자(교권보호책임관)	보고자(학교장)	
교사 ○○○	교감 ○○○	학교장 ○○○	

* 침해유형: 2023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참조

* 사안 보고

유치원, 초·중학교	남부/북부/동부/서부	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강화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고등·각종·특수학교	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 단, **중대 사안**인 경우 즉시 교원돌움터 담당장학사 유선 연락 후 24시간 이내 공문(**서식3-2 사용**) 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항		
1. 「형법」 제2편제25장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 추행, 간음,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 교원이 4주 이상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유·초 → ☎ 032-550-1782 /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 032-550-1781)



 서식3-2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보고서(교육청 중대사안 제출용)

학교명			
사안발생일			
사안신고(접수)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예정일	
구분	성명	소속	직위
피해교원			
침해자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항 (✓ 표기)	<input type="checkbox"/> 「형법」 제2편제25장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 추행, 간음,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 교원이 4주 이상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주요내용(요약)	핵심내용 2줄 정도 작성		
침해 내용 (일시, 장소, 사안 경과 등)	침해학생(0학년 남, 여)이 00에서 피해교원에게 00하는 등 침해하였고, 000 학생은 00 진술하여 00 함(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내용 정리)		
진행 상황	사안 조사 실시, 학생 면담, 경찰 신고 등		
피해교원 조치	① 0000, ② 0000, ③ 0000 ※ 학교장은 침해 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피해교원의 자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침해학생 조치	① 0000, ② 0000, ③ 0000		
기타특이사항	0000		
작성자(업무담당자)	확인자(교권보호책임관)	보고자(학교장)	
교사 ○○○	교감 ○○○	학교장 ○○○	

I. 교육활동 침해행위

II.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시범적 구제 수단

III. 교권보호위원회

IV.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 방안

V. 교원치유지원센터(교원돌봄센터) 운영

부록3. 각종서식



서식4

신고인, 피신고인 등 침해 관련자

교육활동 침해 사안 경위서(진술서)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인)

학생(), 학부모(), 교사(), 기타() * ○ 표시

사 안 내 용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를)	
	어떻게	
	왜	
목격자 여부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성명: 관계:)	
기타입증자료 여부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첨부:)	

* 목격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기록



서식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요청서

위원 성명: ○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제 _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20 년 월 일 시

2. 장 소:

3. 안 건:

20 년 월 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I. 교육활동 침해행위

II.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 수단

III. 교권보호위원회

IV. 교육활동 침해 시안 단계별 대응 방안

V. 교원치유지원센터(교원돌봄센터) 운영

부록3. 각종서식



서식6

신고인·피신고인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출석 통지서

인적 사항	성명		소속	
			직위(급)	
주소				
일 시	년	월	일	요일
장 소				
안 건				
사안의 요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			
안내 및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 사항이 있으면 ○○학교(전화 : 000-0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에 의해 서면 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 진술서(별도 첨부)를 작성하여 ○○학교 교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절 취 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진술 포기서

성 명		소 속	
연락처		직위(급)	
진술포기 사유			

본인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7

신고인·피신고인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서면 진술서

성명		소속	
신고인(피신고인) 과의 관계		연락처	
주소			

아래와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피신고인) : (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귀하

I. 교육활동 침해행위

II.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 수단

III. 교권보호위원회

IV. 교육활동 침해 시안 단계별 대응 방안

V. 교원치유지원센터(교원돌봄센터) 운영

부록3. 각종서식



서식8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록부

일시:

장소:

연번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비고
1	위원장					
2	위원					
3	위원					
4	위원					
5	위원					
6	위원					
7	위원					
8	위원					
9	위원					
10	위원					
11	간사					



서식9

신고인·피신고인용

기피 신청서

신청인	성명		소속	
			연락처	
기피 신청 내용	기피 대상자 성명			
	기피 신청 이유	※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귀중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와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서식10-1

침해학생인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의결서

구 분	성 명	소 속	직위(학년반)
신고인			
피신고인			
개최일시	년 월 일 시 (장소:)		
심의결과	교육활동 침해여부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또는 불인정	
	교육활동 침해유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input type="checkbox"/> 상해와 폭행의 죄(제1항제1호) <input type="checkbox"/> 협박의 죄(제1항제1호) <input type="checkbox"/> 명예에 관한 죄(제1항제1호) <input type="checkbox"/> 손괴의 죄(제1항1제1호) <input type="checkbox"/> 성폭력범죄(제1항제2호) <input type="checkbox"/> 불법정보유통행위(제1항제3호) <input type="checkbox"/>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업무방해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 부당한 간섭(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제1항제4호) ()	
	피해교원 보호조치	※ 해당 침해행위 유형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예) 특별휴가 5일(교원지위법 제14조의3), 심리상담 및 조언(교원지위법 제15조제2항)	
침해학생 조치	예)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 제2호(사회봉사) ○시간, 교원지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심리치료) ○시간 교원지위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육(심리치료)에 보호자도 ○시간 참여하여야 함 ※법률조항을 명시하여 조치 내용 기재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I. 교육활동 침해행위

II.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 수단

III. 교권보호위원회

IV. 교육활동 침해 시안 단계별 대응 방안

V. 교원치유지원센터(교원돌봄센터) 운영

부록3. 각종 서식

이유

- (당사자의 지위) 위 학생은 00학교 0학년 0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 (심의요청 사유) 학생에 대한 00학교장의 심의 요청 사유를 보면,

학생이 2021. 4. 1. 0시 0분 경 0학년 0반 교실에서 국어수업 중이던 피해교원 000이 과제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0000”, “00 000”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쳤다는 것으로, 학생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학생의 주장)
- (피해교원의 의견)

5. (위원회의 판단) 피해교원 진술서, 목격학생 진술서의 각 기재,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건보고서, 학생과 피해교원이 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학생이 2021. 4. 1. 0시 0분 경 0학년 0반 교실에서 국어수업 중이던 피해교원 000이 과제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0000”, “00 000”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친 사실이 인정되며, 학생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써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조치의 양정에 있어서 (시행령 제11조 및 고시 참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이 (), 지속성이 (), 고의성이 (), 피해교원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크고, 경미하지는 않으나) 학생이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교원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교원도 학생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생활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생에 대한 조치는 주문과 같이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제○호 ‘학교에서의 봉사 ○시간~퇴학’, 「교원지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 ○시간’,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교원지위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시간’으로 의결한다.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는 주문과 같이 심리상담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으로 의결한다.



서식10-2

학생 외의 침해자인 경우

I. 교육활동 침해행위

II.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 수단

III. 교권보호위원회

IV. 교육활동 침해 시안 단계별 대응 방안

V. 교원치유지원센터(교원돌봄센터) 운영

부록3. 각종서식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서

구 분	성 명	소 속	직위(학년반)
신고인			
피신고인			
개최일시	년 월 일 시 (장소:)		
심의결과	교육활동 침해여부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또는 불인정	
	교육활동 침해유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input type="checkbox"/> 상해와 폭행의 죄(제1항제1호) <input type="checkbox"/> 협박의 죄(제1항제1호) <input type="checkbox"/> 명예에 관한 죄(제1항제1호) <input type="checkbox"/> 손괴의 죄(제1항1제1호) <input type="checkbox"/> 성폭력범죄(제1항제2호) <input type="checkbox"/> 불법정보유통행위(제1항제3호) <input type="checkbox"/>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업무방해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 부당한 간섭(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제1항제4호) ()	
	피해교원 보호조치	※ 해당 침해행위 유형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예) 특별휴가 5일(교원지위법 제14조의3), 심리상담 및 조언(교원지위법 제15조제2항)	
심의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통지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 교권 보호 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위 관련자는 000이다.
2. (심의요청 사유) 관련자에 대한 00학교장의 심의 요청 사유를 보면,
3. (학부모의 주장)
4. (피해교원의 의견)
5. (위원회의 판단) 피해교원 진술서, 목격학생 진술서의 각 기재,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건보고서, 관련자와 피해교원이 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자가 2023. 4. 1. 0시 0분 경 0학년 0반 교실에서 00수업 중이던 피해교원 000에게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0000”, “00 000”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친 사실이 인정되며, 관련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써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관련자에 대한 조치는 이 사안에 대한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를 권고한다.
또한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는 심리상담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으로 의결 한다.

I. 교육활동 침해행위

II.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시범적 구제 수단

III. 교권보호위원회

IV. 교육활동 침해 시안 단계별 대응 방안

V. 교원치유지원센터(교원돌봄센터) 운영

부록3. 각종서식



서식 1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예시)

일시				
장소				
안건				
신고인	성명		직위	
피신고인	성명		직위	
참석위원	위원정수: 명, 참석위원: 명,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여부(○,×			
관련당사자 참석여부	신청인(피해교원)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input type="checkbox"/>
	피신청인(학생, 학부모 등)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input type="checkbox"/>
	피신청인 보호자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input type="checkbox"/>
진행순서	1. 개회 선언 및 성원보고 2. 위원장 인사말 3. 위원 제척, 기피, 회피 등 확인 4. 위원회 목적, 진행절차, 주의사항 등 전달 5. 사건조사 보고(간사) 6. 관련 당사자(피해교원, 침해행위 관련자인 학생, 학부모 등) 진술 7.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피해교원 보호조치, 침해학생 조치 등 심의 8.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서 작성 9. 폐회			

* 발언자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작성



서식12-1

피해교원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

구분	성명	소속학교	직위(학년/반)
신고인			
피신고인			
조치원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요지)	(예시) ○○○학생(침해학생)은 2023년 ○월 ○일 오전 10:30경 교실에서 ○○○ 교사(피해교원)가 수업 중 핸드폰을 하고 있던 ○○○학생을 지적하자 ○○○ 교사에 대하여 ‘미친년아 눈깔이 빼었냐, 왜 자꾸 시비 걸고 지랄이야. 하는 짓도 찐따 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였음		
개최일시	년 월 일 00:00~ (장소:)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심의결과	교육활동 침해여부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또는 불인정	
	교육활동 침해유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input type="checkbox"/> 상해와 폭행의 죄(제1항제1호) <input type="checkbox"/> 협박의 죄(제1항제1호) <input type="checkbox"/> 명예에 관한 죄(제1항제1호) <input type="checkbox"/> 손괴의 죄(제1항1제1호) <input type="checkbox"/> 성폭력범죄(제1항제2호) <input type="checkbox"/> 불법정보유통행위(제1항제3호) <input type="checkbox"/>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업무방해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에 대해 빙복적 부당한 간섭(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제1항제4호) () ※ 해당 침해행위 유형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피해교원 보호조치	예) 특별휴가 5일(교원지위법 제14조의3), 심리상담 및 조언(교원지위법 제15조제2항)	
	침해학생 조치내용	예)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 제2호(사회봉사) ○시간, 교원지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심리치료) ○시간 교원지위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육(심리치료)에 보호자도 ○시간 참여하여야 함 (특별교육(심리치료)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받아야 함) ※ 법률조항을 명시하여 조치 내용 기재	
피해교원 불복절차 안내	국 · 공립 학교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 청구(「행정소송법」 제20조) 	
	사립학교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경우,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0○○. ○. ○.

○○학교장 ○ ○ ○ (직인)



서식 12-2

침해학생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학교	학년반
조치원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요지)	침해 행위의 날짜, 장소, 행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 : ○○○학생(침해학생)은 2023년 ○월 ○일 오전 10:30경 교실에서 ○○○ 교사(피해교원)가 수업 중 핸드폰을 하고 있던 ○○○학생을 지적하자 ○○○ 교사에 대하여 '미친년아 눈깔이 빼었냐, 왜 자꾸 시비 걸고 지랄이야. 하는 짓도 짐마 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였음		
개최일시	년 월 일 시 (장소:)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심의결과	교육활동 침해여부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또는 불인정	
	교육활동 침해유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input type="checkbox"/> 상해와 폭행의 죄(제1항제1호) <input type="checkbox"/> 협박의 죄(제1항제1호) <input type="checkbox"/> 명예에 관한 죄(제1항제1호) <input type="checkbox"/> 손괴의 죄(제1항제1호) <input type="checkbox"/> 성폭력범죄(제1항제2호) <input type="checkbox"/> 불법정보유통행위(제1항제3호) <input type="checkbox"/>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업무방해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 부당한 간섭(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제1항제4호) () ※ 해당 침해행위 유형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조치 내용	예) 교원자위법 제18조제1항 제2호(사회봉사) ○시간, 교원자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심리치료) ○시간 교원자위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육(심리치료)에 보호자도 ○시간 참여하여야 함 (특별교육(심리치료)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받아야 함) ※ 법률조항을 명시하여 조치 내용 기재	
재심 안내	전·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위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8항)		
침해 학생 불복절차 안내	국 · 공립 학교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 청구(「행정소송법」 제20조)	
	사립학교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경우,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0○○. ○. ○.

○○학교장 ○ ○ ○ (직인)



 서식12-3

학생 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심의이유			
개최일시	년 월 일 시 (장소:)		
학교 교권 보호 위원회 심의결과	교육활동 침해여부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또는 불인정	
	교육활동 침해유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input type="checkbox"/> 상해와 폭행의 죄(제1항제1호) <input type="checkbox"/> 협박의 죄(제1항제1호) <input type="checkbox"/> 명예에 관한 죄(제1항제1호) <input type="checkbox"/> 손괴의 죄(제1항제1호) <input type="checkbox"/> 성폭력범죄(제1항제2호) <input type="checkbox"/> 불법정보유통행위(제1항제3호) <input type="checkbox"/>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업무방해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 부당한 간섭(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제1항제4호) () ※ 해당 침해행위 유형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심의 결과		

20○○. ○. ○.

○○학교장 ○ ○ ○ (직인)



서식 1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보고서(교육청 제출용)

학교명				
사안발생일		사안신고(접수)일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신고인				
피신고인				
침해 내용 (일시, 장소, 사안 경과 등)				
학교교권 보호 위원회	개최일	년 월 일	심의 결과 통지일	년 월 일
	위원수	재적 명 / 출석 명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여부(○,×))	통지방법	서면으로 등기우편 발송
심의결과	교육 활동 침해 여부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또는 불인정		
	교육 활동 침해 유형 ※ 해당 침해행위 유형에 ☒ 표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input type="checkbox"/> 상해와 폭행의 죄(제1항제1호) <input type="checkbox"/> 협박의 죄(제1항제1호) <input type="checkbox"/> 명예에 관한 죄(제1항제1호) <input type="checkbox"/> 손괴의 죄(제1항1제1호) <input type="checkbox"/> 성폭력범죄(제1항제2호) <input type="checkbox"/> 불법정보유통행위(제1항제3호) <input type="checkbox"/> 공무 방해에 관한 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업무방해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 부당한 간섭(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활용·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제1항제4호) <input type="checkbox"/>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제1항제4호) ()		
	피해 교원 보호 조치	예) 특별휴가 5일(교원지위법 제14조의3), 심리상담 및 조언(교원지위법 제15조제2항)		
침해 학생 조치	예1)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 제2호(사회봉사) ○시간(단독조치) 예2)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 제4호(출석정지) ○일 교원지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심리치료) ○시간(부가조치), 제18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육(심리치료)에 보호자도 ○시간 참여하여야 함(부가조치) ※ 법률조항을 명시하여 조치 내용 기재			
작성자(업무담당자)	확인자(교권보호책임관)		보고자(학교장)	
교사 ○○○	교감 ○○○		학교장 ○○○	

* 결과보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후 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강화-교육지원과)와 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동시 공문
(단 고, 특수, 각종학교는 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만 공문)보고



서식14

피해교원 작성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서

신고인			피신고인				
소속	직급	성명	구분	성명	교원과의 관계		
연락처			연락처				
주소			주소				
조정 요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절차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 조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원할 시 이루어지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양 당사자가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분쟁조정을 합니다. 이 경우 교육활동 침해 여부·피해교원 보호조치·침해학생 조치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분쟁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종결합니다. ◦ 분쟁 조정이 불성립하면 심의 절차(교육활동 침해 여부·피해교원 보호조치·침해학생 조치 심의)로 이어집니다. ◦ 단, 심의를 원하지 않으면 불성립한 채로 종결합니다. 이후 양 당사자가 모두 다시 분쟁 조정을 원할 경우 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쟁 조정 불성립 시 심의요청여부	<p><input type="checkbox"/> 분쟁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심의를 요청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분쟁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심의를 하지 않고 종결하기를 원합니다.</p> <p>※ 요청사항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p>						

위의 내용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위 성명 (인)

○○학교장 귀하



서식 15

신고인·피신고인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 조정 출석 통지서

인적 사항	성명		소속			
	주소		직위(급)			
출석 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출석 장소						
조정 사안	사안 내용 요약, 신청인의 요청사항 등					
안내 및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 사항이 있으면 ○○학교(전화 : 000-0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조정 일시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 16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 조정 합의서

분쟁조정 신고인			분쟁조정 피신고인		
소속	직급	성명	구분	성명	교원과의 관계
연락처			연락처		
주소			주소		
개최일시	년 월 일 (장소:)				
분쟁의 경위					
분쟁의 쟁점 (당사자의 의견)	1. 2.				
조정 결과 (예시)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사과함.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오해한 점에 대하여 이해하고 피신청인의 사과를 받아들임.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원만하게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함.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20 년 월 일

분쟁조정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분쟁조정 피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서식 17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 조정 회의록(예시)

일시				
장소				
안건				
신고인	성명		직위	
피신고인	성명		직위	
참석위원	위원정수: 명, 참석위원: 명,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여부(○, ×)			
관련당사자 참석여부	신청인(피해교원)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input type="checkbox"/>
	피신청인(학생, 학부모 등)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input type="checkbox"/>
	피신청인 보호자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input type="checkbox"/>
진행순서	1. 개회 선언 및 성원보고 2. 위원장 인사말 3. 위원 제척, 기피, 회피 등 확인 4. 위원회 목적, 진행 절차, 주의사항 등 전달 5. 사건조사 보고(간사) 6. 관련 당사자(피해교원, 침해행위 관련자인 학생, 학부모 등) 진술 7. 조정합의서 작성 8. 폐회			

* 발언자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작성



서식18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임명) 동의서 및 비밀서약서(예시)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주소				
연락처	근무처		E-mail	
	자택		휴대전화	
위촉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임명)에 동의하며,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위와 같은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학교장 귀하



서식 19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용

위촉장(예시)

소속:

성명:

귀하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20○○. ○. ○. ~ 20○○. ○. ○.)

20 년 월 일

○○○학교장(직인)



서식20

교원 치유지원 프로그램 신청 공문(예시)

00학교

수신 인천광역시교육감(세계시민교육과장)

(경유)

제목 교원 치유지원 프로그램 신청

- 관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으로 심리상담을 통한 심리·정서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해 교원 치유 지원 프로그램을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1. 교원 치유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1부.

2. 교원 치유 지원 프로그램 동의서 1부. 끝.

00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세계시민교육과장)

작성자

부장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I. 교육활동 침해행위

II.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 수단

III. 교권보호위원회

IV. 교육활동 침해 시안 단계별 대응 방안

V. 교원치유지원센터(교원돌봄센터) 운영

부록3. 각종 서식



서식 20

교원 치유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신청일자: 년 월 일

성명	(□여성 □남성)		직위	
소속	학교명: 담당업무:		담임	□ 담임(학년반) □ 비담임
생년월일			연락처	
교육경력			교원구분	□기간제교원 □정규교원
설립구분	□ 국·공립	□ 사립	이메일	
학교 교권 보호위원회	<input type="checkbox"/> 개최(교육활동침해유형: <input type="checkbox"/> 개최 예정(개최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 사항 없음)			
신청 사유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침해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중 심리적 소진 (자세히 기록)			
도움받고 싶은 부분				
지원 요청 내용	<input type="checkbox"/> 교원돌움터 상담 <input type="checkbox"/> 외부 협약기관 상담 및 치료 연계			
이전 상담 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최초 신청)	<input type="checkbox"/> 외부기관: (<input type="checkbox"/> 병원 기관명: /총 회기) <input type="checkbox"/> 교원돌움터 비용 지원 및 상담 내역 있음 (교육활동 중 심리적 소진상담시 교직 생애 중 총 1회만 지원)		



서식20

교원 치유지원 프로그램 동의서

1. 귀하의 상담 및 심리검사 내용은 비밀을 보장합니다. 다만,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비밀보장 한계 상황이오니 잘 읽고 체크하여 주십시오.

다음

<필수 동의 사항> ※ 동의 거부할 경우, 상담 진행이 불가합니다.

가. 상담자 윤리규정에 의거 상담 진행 중

- 1) 자살의 의도 및 타해의 의도를 나타낼 때
- 2) 법원에서 요청할 때
- 3) 아동학대 및 성폭력
- 4)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 및 기타 신고 의무에 해당하는 정보 등
위 내용을 인지할 경우 내담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상담 내용 일부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나. 내부 상담사 교체 및 협약기관 연계 시 상담자료 일부 또는 전체를 전달합니다.

확인합니다

<선택 동의 사항>

다. 효과적인 상담 진행을 위한 상담·검사 자문용 상담 녹음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 3주 이상 상담(연계기관 포함)에 불참할 경우 상담이 자동 종결됩니다. 확인합니다

3. 공무상 요양승인시 치유지원비용은 공상처리됩니다. 확인합니다

4. 상담 중 심리검사, 외부기관과의 연계, 집단상담, 기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상담자의 권유 및 본 센터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합니다

5. 예산 소진시 상담 및 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6. 협약기관 연계를 위해 교원돌봄터에서 초기 면접상담이 진행됩니다. 사전 연락없이 초기면접 상담 예약일에 불참 시 대기자가 많아 3개월 이후 상담이 재예약 됩니다. 확인합니다

7. 심리적 소진으로 상담시 교직 생애 중 총1회만 비용 및 상담을 지원해 드립니다. 확인합니다

※ 내담자 연락처:

※ 보호자 연락처:

(관계:)

위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였으며 상담의 긍정적 성과를 위해 적극 참여할 것이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확인일 : 20 년 월 일

내담자 :

(서명)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돌움터에서 상담 및 심리검사 신청을 하시는 분께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이용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3자 제공에 대해 안내하오니 자세히 읽은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수집된 정보는 교원돌움터 내담자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

2. 수집항목

교원돌움터의 내담자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합니다.

- 필수정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소속청, 소속교, 설립 구분, 교원 구분, 교직 경력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및 신청서 보존기간 : 해당 사업 및 자료 보존 법정 기간(10년)

4. 필수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미동의 시 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제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상담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인적사항 및 요청 자료 등 수집·이용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민감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교원돌움터에서 상담 및 심리검사를 신청하시는 분께 수집하는 민감정보의 수집목적, 이용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을 안내하오니 자세히 읽은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목적

- 수집한 정보는 상담 및 심리검사 업무처리(협약기관 연계, 연구및통계) 시 사용

2. 민감정보 이용항목

- 이전 상담 경험, 가족사항(성격 또는 느낌 등), 상담 신청 사유, 상담 및 심리검사 기록 등

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해당 사업 및 자료 보존 법정 기간(10년)

4. 민감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미동의 시 상담 및 심리검사 제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상담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의거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교원돌움터는 필요시 귀하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연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위촉상담사, 협약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경찰서, 법원 등

2. 제공 목적 : 비밀보장 예외 조항 및 상담 연계

3. 제공 항목 : 귀하로부터 제공 받은 성명, 소속, 휴대폰 번호, 민감정보

4.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사업 및 자료 보존 법정 기간(10년)

5. 제공에 관하여 미동의 시 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불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상담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와 민감 정보 제공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식21

교육활동 보호조치 비용 신청서

1. 인적 사항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2. 교육활동 침해행위 학생 및 그 보호자 등의 인적 사항

침해행위 당사자	소속	성명	연락처	주소
학생	학생			
	학생의 보호자			
학생 이외 침해행위자				

*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필요한 사항으로 연락처, 주소 등 정확하게 기록

3. 교육활동 보호조치 비용 신청 내역

보호조치 영역	금액	치료 또는 상담 기관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비	줄 추가 가능	
합계금액		
공무원 재해보상법	지급받음 <input type="checkbox"/> 지급받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급받음 <input type="checkbox"/> 지급받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보험으로 보상	지급받음 <input type="checkbox"/> 지급받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침해행위자 등으로부터 치료비 및 손해배상 등	지급받음 <input type="checkbox"/> 지급받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제출서류: 병원 치료 영수증, 병원 진단서, 신청인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상담기관
상담 이용 시 상담확인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통지서 등(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가능함)

위와 같이 교육활동 보호조치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22

인천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서

접수자기록	번호	교권-
	일자	
	접수자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	소속	00교	직위 (신분)	교사
	성별	여, 남	휴대전화	000-0000-0000	피신청인과의 관계	담당, 교과담당 교사 등
	주소	인천광역시 ○○구 ○○로 100(100동 100호)				
피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	소속	00교	직위 (신분)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성별	여, 남	휴대전화	000-0000-0000	신청인과의 관계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주소	인천광역시 ○○구 ○○로 100(100동 100호)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개최 일자	20 년 ○월 ○일	결과	(예시) 분쟁조정 불성립		
조정 요청 내용	(예시) 20 년 ○월 ○일 발생한 ___와 ___의 사안으로 ~ (사안 관련 내용 및 요청사항 작성)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이 불성립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분쟁 조정을 요청하고자 함. [내용 작성 시 별첨 가능]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 [붙임] 사안 관련 서류(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통지서 등) 1부.
-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한 경우 불성립했을 때, 심의를 원하지 않고 다시 분쟁 조정을 원할 경우 신청 가능
- ※ 학교의 장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피신청인의 분쟁 신청 동의 여부를 확인 후, 동의할 시에 피신청인 정보를 기입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로 공문(비공개 6호) 제출



 서식23

교원배상책임보험 신청서

성명 (신청자)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소속	000학교
사건 일시	년 월 일 시	사건 장소	
사건 경위 (개조식 작성)	사고이후의 조치사항 등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바랍니다.		
확인기관명	000학교	확인 기관장	(서명)
기관주소		전화번호	

사고자의 사고사실이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내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인)

I. 교육활동 침해행위

II.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시범적 구제수단

III. 교권보호위원회

IV. 교육활동 침해 시안 단계별 대응 방안

V. 교원치유지원센터(교원돌봄센터) 운영

부록3. 각종서식



서식 24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 자문 의뢰서

관련 교원	소속		
	성명	직급	성별
자문 요청 내용			
위와 같이 자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위() 성명()			



 서식25

교육활동 침해행위 형사고발 요청서

신청자			
성명		소속교	
직위		성별	남() 여()
주소			
연락처	근무처		휴대전화
	E-mail		

고발 대상(침해자)

성명		소속	
직위(신분)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개최() 미개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일	
사안내용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 필요시 추가 내용 진술 등 요청 가능		
요청사유			
특이사항/ 입증자료	(예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 중 입증자료 첨부 가능		

위와 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보고 공문(예시)

00학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00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안 보고

- 관련: 00학교-000(2023.00.00.)
- 교육활동 침해 발생 사안이 접수되어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00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안 보고서 1부. 끝.

00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세계시민교육과장), 인천광역시00교육지원청교육장(초등교육과장)

작성자

부장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 접수

(

)



서식26-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참석 알림 공문(예시)

00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 제0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참석 알림

- 관련: 00학교-000(2023.00.00.)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 위원에게 참석을 알리고자 합니다.

가. 일시: 2023.4.29.(금) 16:00

나. 장소: 학교운영위원회실(2층)

다. 대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라. 통지 방법: 등기우편 또는 e-mail

붙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요청서 1부. 끝.

00학교장

수신자

작성자

부장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 접수

(

)

I. 교육활동 침해행위

II.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 수단

III. 교권보호위원회

IV. 교육활동 침해 시안 단계별 대응 방안

V. 교원치유지원센터(교원돌봄센터) 운영

부록3. 각종서식



서식26-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출석 알림 공문(예시)

00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 제0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출석 알림

1. 관련: 00학교-000(2023.00.00.)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 당사자에게 출석을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2023.4.29.(금) 16:00

나. 장소: 학교운영위원회실(2층)

다. 대상: 사안 관련 당사자 및 학부모(침해자가 학생일 때)

라. 통지 방법: 등기우편 또는 e-mail

붙임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출석통지서 1부.

2. 서면진술서 1부. 끝.

00학교장

수신자

작성자

부장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 접수

(

)



서식26-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공문(예시)

00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 제0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보고

- 관련:00학교-000(2023.00.00.)
- 제0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를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1부. 끝.

00학교장

수신자

작성자

부장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서식26-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결과 통지 공문(예시)

00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 제0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통지

- 관련: 00학교-000(2023.00.00.)
- 제0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통지 대상: 양 당사자

나. 통지 방법: 등기우편

- 붙임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신고인용) 1부.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피신고인용) 1부. 끝.

00학교장

수신자

작성자

부장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 접수

(

)



서식26-6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보고서 제출 공문(예시)

00학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00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출

- 관련:00학교-000(2023.00.00.)
- 00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00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보고서 1부. 끝.

00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세계시민교육과장), 인천광역시00지원청교육장(초등교육과장)

작성자 부장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I. 교육활동 침해행위

II.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 수단

III. 교권보호위원회

IV. 교육활동 침해 시안 단계별 대응 방안

V. 교원치유지원센터(교원돌봄센터) 운영

부록3. 각종서식



서식26-7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알림 공문(예시)

00학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00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결과 알림

- 관련: 00학교-000(2023.00.00.)
- 제18조4항(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에 의거하여 00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 조치 결정에 따른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증을 불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불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증 1부. 끝.

00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세계시민교육과장)

작성자

부장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 접수

(

)



교육활동 침해 외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

1. 교육활동 침해 외 사안 처리 종류

-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징계처분과 같은 불이익 처분 및 부당한 처우,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고충심사청구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구분	종류	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누가		국·공립교원	국·공립, 사립교원	국·공립, 사립교원
청구내용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 기타 신상문제 등 여러 고충에 대한 심사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권익 구제	인권침해, 차별행위
결정의 효력		권고	공·사립 모두 기속력 있음	행정기관에 대한 권고
불복할 경우	청구 인정		공립은 불복 못함. 사립은 소청심사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가능	
	청구 기각	법적인 기속력은 없어 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복 절차(행정소송 등) 없음	공립은 행정소송. 사립은 소청심사위 상대 행정소송과 법인 상대 민사소송	-
기한		없음	30일 이내	없음
단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시·도교육청) ⇒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교육부)	-	-
근거		교육공무원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 인천광역시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 운영 안내

- 관련 법규: 「교육공무원법」제49조(고충처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 종류: 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각 시·도교육청)와 중앙고충심사위원회(교육부)가 설치되어 있다.(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3항)
- 성격: 고충심사제도는 고충을 제기하는 공무원과 관계기관이 사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고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그 시정 및 해결책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이는 심사결과의 효력에 있어 행정청은 소청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반드시 기속되나, 고충심사의 결과는 당해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시정조치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청구대상: 국·공립 교원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아 고충심사위원회 심사대상이 아님)
교원 중 교장·원장은 교육부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바로 고충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외의 교원은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중앙고충심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4항, 제5항)
- 고충처리의 대상
 - 교육공무원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1항)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규정 • 업무량,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에 관한 사항 •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기타신상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 •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 등

■ 고충처리의 제외 대상

- 타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사항, 조직의 비리 등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요구, 법령의 개폐가 요구되는 사항 (출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ace.go.kr/act/o_dilemma_object.do)
- 시정, 구제 등의 절차가 다른 법규에 마련되어 있는 사항(소청심사에 속하는 사항, 감사관의 판정 또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공무원 연금급여심사에 속하는 사항)
- 국가사무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국회 및 인천광역시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예산 조치의 요구 등—, 당해 행정기관으로는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



■ 고충심사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항

- 다음과 같은 사항은 다른 법령에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실제적인 해당 절차를 먼저 거쳐서 고충심사 청구가능

- (가) 감사관(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
- (나) 공무원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 (다) 징계처분, 직위해제 등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 처분

- 인사행정에 관한 고충

인사 관계 법령에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사항

- (가)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지급기관별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
- (나) 근무평정: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결과 조정 신청 가능
- (다) 전보, 교류: 부처별 자체 규정과 운영 원칙에 따라 처리

■ 주요 내용

-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해당 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2항)

- 고충심사청구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 고충이 지속되고 있는 한 언제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교육공무원이 중앙고충심사 청구를 할 때는 보통고충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고충심사 청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 신고

■ 성희롱·성폭력 신고

- 교육공무원에 대한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본인 및 제3자 누구나 소속기관 성고 충상담원, 각 시·도교육청 온·오프라인 신고 창구, 수사기관 등에 신고가 가능
- 처리절차

STEP 01

신고 접수 · 상담

- 소속기관 성고충상담원
- 시·도교육청
온·오프라인 창구
- 수사기관

STEP 02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 기관에 조사 요청
- 직접 조사(필요시)

STEP 03

조치결정 및 조치요구

- 심의위원회 개최
- 성비위 여부 및 피해자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STEP 04

확인점검

- 조치 이행여부 및
2차 피해 모니터링

• 여성가족부에도 신고 가능

– 여성가족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유선 02-735-7544)

■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행위 신고

- 기관 내 상사 및 동료 등의 갑질, 괴롭힘, 부당행위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각 시·도교육청(감사부서 등) 온·오프라인 창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갑질피해신고)로 신고할 수 있음

교육활동 매뉴얼 개발진

구분	소속	성명	직급
2022 교육부 매뉴얼 개정본 집필 및 검토·협력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매뉴얼 개발진		
집필 및 검토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조선미	과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홍지연	장학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허정임	장학사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신병열	장학사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이승미	상담사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윤미라	상담사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김봉민	변호사
검토 	인천검암초등학교	김인선	교감
	간재울중학교	박상배	교사
	계양중학교	박영훈	교사
	옥련중학교	백명자	교사
	동부교육지원청	김요섭	장학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교원돌봄터) 담당자

구분	연락처
중·고·각종·특수학교 담당 장학사	☎032-550-1781
유·초등학교 담당 장학사	☎032-550-1782
전문상담사	☎032-550-1783~4
변호사	☎032-550-1785



2023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발 행 행 2023년 3월

발 행 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169번길 73
인천해밀학교 창의관 3층

전 화 (032) 550-1781~5

홈페이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교원돌봄터](#)